

近海鮫鱈網漁業經營의 原價實態에 關한 研究

A study on the cost state of the stow net Fishery

朴 正 鎬
Jeung Ho Park

目 次

- | | |
|-------------------|--------------------|
| I. 序 言 | 2. 原價比較 |
| II. 調查研究의 概要 | 3. 漁撈事業原價計算 |
| III. 近海鮫鱈網漁業의 概況 | V 近海鮫鱈網漁業의 損益分岐点分析 |
| IV. 近海鮫鱈網漁業의 原價分析 | VI. 結 論 |
| 1. 原價要素別分析 | Summary |

I. 序 言

企業은 市場의 需要를 對象으로 하여 經營活動을 展開하는 繼續企業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企業의 規模가 漸次로 擴大됨에 따라 資本蓄積의 增大, 技術革新의 前進, 購買力의 上昇 等은 生産規模의 擴大, 大量生産, 大量消費를 招來하여 近代의 生産企業은 오히려 激甚한 競爭 가운데 營爲되고 있다. 그러므로 生産企業間의 競爭이 激化할수록 生産企業이 同種企業과의 競爭을 克服하기 위하여 生産物의 質의 向上, 量的 增大, 勞動·原料의 節約을 圖謀하여 生産原價의 低廉을 期하고자 總力を 기울이게 되었다. 따라서 近代生産企業은 自己의 經營活動을 科學的, 合理的으로 營爲해 나가야 繼續企業으로서 發展과 成長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生産企業은 그들이 生産한 製品을 市場이나 需要者에게 提供 함으로써 製造原價에 利益이 붙은 販賣代金を 받는다, 여기서 收金된 販賣代金은 大部分 資金으로 다시 投入되고, 企業의 經營活動은 擴大再生産으로 展開된다. 즉 生産企業의 經營活動은 財務活動, 調達活動, 生産活動, 販賣活動의 循環過程을 反復 하면서 達成 하고자 하는 目標(利益)을 얻게 된다.

製品을 生産, 販賣하는 生産企業에서는 消費者의 慾求를 充足시킬 수 있는 “慾求充足物”로서의 製品을 經濟的으로 生産할 수 있어야 하며, 製品을 生産하는 企業側에서 볼 때에는 그 製品은 收益性이 높아야 하는 것으로 經濟的이면서 效率的으로 生産할 수 있는 生産設計를 하여야 한다. 結局 企業의 立場에서 볼때 消費者와 企業이 모두 滿足할 수 있는 生産設計가 必要한 것으로 利益이 滿足될 만한 水準에서 生産 System의 設計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生産 System의 意思決定은 生産設計에 依해서 크게 左右되는 것으로 이에 關連된 여러 事項들은 製品의 生産原價와 密接한 關係가 있는 것들로서 이들에 의해서 生産 System의 有効性은 크게 左右된다고 할 것이다.

生産 System이 이룩된 다음에는 生産 System으로 하여금, 주어진 目標를 達成하도록 持續的으로 Control할 管理 System의 役割이 必要하다. 生産活動의 Control System은 近代生産 System의 大規模化 내지는 複雜化가 더욱 進前됨에 따라 그 重要性이 強調되고 있다. 왜냐하면 生産 System의 設計가 제아무리 優秀하다 하더라도 Control System의 效果的이며, 均衡있는 運營이 없이는 有効性의 效率的인 達成은 期待할 수 없기 때문이다.

生産의 Control System은 主로 工程, 品質, 原價 等を 통해서 生産現象을 Control한다. 따라서 生産의 Control System의 評價要素中 原價에 對한 Control System (原價管理 System)은 生産企業의 目標達成을 可能케 하며, 目標向上도 期待할 수 있는 重要한 要素인 것이다.

그러므로 近代生産企業에 있어서 經營管理面에 原價計算의 利用이 크게 開發되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企業內部的 意思決定 資料로서도 그의 利用이 擴大되어 가고 있어 原價計算은 研究面에 있어서나, 實務面에 있어서 현저한 發展을 하고 있다. 이것은 從來의 原價計算이 主로 財務會計의 補助的 手段으로서의 役割에서 더욱 發展하여 經營管理用具로서의 機能까지 發揮하게 된 點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企業의 窮極의 目的인 營利追求의 目的達成을 위하여서는 收益의 增大라는 一面도 存在하고 있지만, 企業의 合理化를 圖謀하기 위한 手段으로 原價節減으로 因한 營利追求를 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點으로 보아 原價計算制度는 工業經營에서 뿐만 아니라 産業的 價値가 高度化한 水産業을 營爲하는 水産企業에도 그 適用이 時急히 要請되고 있는 實情이다.

우리나라는 最近에 水産業에 對한 産業的 價値가 날로 높아져서, 새로운 認識가운데 水産部門에의 集中的인 投資가 이루어져 生産性(漁獲量)을 向上 시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沿近海漁業의 많은 漁業經營體가 從來의 因習과 經驗에 의한 經營으로 一貫되어 있다는 事實로서, 앞으로 漁業經營의 管理面에서 是正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말하면 諸經營管理技法의 運用, 特히 計數에 의한 管理가 거의 等閑視 되고 있다는 點이다.

今日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漁業經營體는 資本集約的인 企業形態로 轉換되고 있다는 點으로 보아, 漁業經營體도 經營適否를 判定하고, 未來의 經營方針을 樹立하는데, 有効한 計數에 依한 管理의 諸經營技法의 導入이 이루어져야 할 時點에 이르렀다고 보겠다.

그러므로 本人은 資本制的 性格을 띤 近海鮫鱧網漁業中 鋼船(75噸級)으로서, 群山地方을 根據地港으로 하여 西海岸의 近海를 비롯한 東支那海 漁場에서 操業하는 近海鮫鱧網漁業經營에 對한 原價의 構造內容과 漁獲物의 單位當 漁撈事業原價計算을 통하여, 이를 要約整理

近海鮫鱈網漁業經營의 原價實態에 關한 研究

하고, 그 結果를 明白히 分析表示함으로써, 本漁業에서 節減시켜야 할 原價項目을 찾아 내고, 原價發生에 關한 推勢·要因을 把握 하므로써, 本漁業의 適否判定, 利益管理 및 未來經營方針 樹立에 도움을 주는 資料提供과 漁業經營에 計數的 管理의 必要性을 鼓吹시켜 주는데 그 目的이 있는 것이다.

II. 調查研究의 概要

本資料는 近海鮫鱈網水産業協同組合 群山支所에 屬하는 近海鮫鱈網漁業(水産業法 第11條 第1項, 水産業法施行令 第14條 3의 10號에 의한 漁業)의 操業隻數中에서도 鋼船으로 31% (71~80噸級)의 가장 分布가 높은, 中間值의 75噸級을 標本船으로 任意抽出하여 調查된 資料이며, 1976年 6月~1978年 5月까지 滿 2個年間 經營體의 收支狀況을 調查 分析한 것이다. 이는 每航次別로 漁獲金額 및 漁獲量(箱子當, kg當)과 費用項目을 區分하여, 調查한 것을 每月別로 算出, 集計한 것이며, 漁獲金額은 總委販價格의 月別集計를 意味하며, 漁獲量은 月別 總委販量을 箱子數와 kg으로 區分하여 算出, 集計 하였으며, 費用項目은 다음과 같은 原價要素로 調查한 것이다.

- ① 船具費 ② 漁具費 ③ 燃料費 ④ 얼음代 ⑤ 容器代 ⑥ 給料 및 賃金 ⑦ 福利厚生費 ⑧ 主副食費 ⑨ 船價償却費 ⑩ 修繕費 ⑪ 船員共濟料 ⑫ 租稅公課 ⑬ 販賣手數料 ⑭ 販賣管理費

이와 같은 方法으로 調查된 資料에 의하여 近海鮫鱈網漁業의 原價構成要素를 比較 分析 把握 하고져, 原價의 要素別 原價計算을 통하여 生産原價(漁撈事業原價)를 算出 하였으며 여기에 總原價는 販賣手數料와 其他販賣管理費를 加算하여 算出 하였고, 營業外費用은 算入치 않은 것이다. 즉 營業外費用을 製品原價에 算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相反된 見解가 存在하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支給利子란 回避可能한 財務費用으로서, 또한 水産經營體의 資本調達源泉如何에 따라서 相異한 製品原價가 算出되어 진다는 點에서 原價에 算入하는 것을 反對하는 見解가 있다. 反面에 企業의 繼續的인 維持를 위해서는 特히 賣價決定을 위한 原價資料로 利用할 때는 現實의으로 各 經營體가 負擔하고 있는 支給利子를 原價에 算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見解도 成立된다.¹⁾ 이러한 相反된 見解가 存在하고 있다는 點에서 本資料 整理에 있어서 營業外費用(支給利子)을 算入치 않은 總原價로서 算出한 것이다. 이같은 總原價에서 漁獲量(箱子數와 kg)으로 나누어 單位當原價를 算出 하였다.

原價計算은 그 特徵이 對象計算이고 單位計算이라고 하였으나, 原價計算制度로서 行하여지는 原價計算은 財務會計와의 關聯上 一定한 期間을 區劃하여 行하여 것으로 그 期間은 普通 一個月이다²⁾ 라는 點으로 보아, 原價를 月別로 算出하여 나타 냈다. 또한 原價比較로

1) 張設鎬, 鄭俊秀, 崔正銳; 水産物 生産原價에 關한 調查研究, 水産經濟叢刊 (1977.6), p. 13.

2) 尹根鎬; 最新原價計算, 1968, p. 20.

<表-1>

近海鮫鱓網漁業의 漁船勢力(群山地方)

78. 8. 31. 現在

噸級別 船別 漁船數(隻)	30t 未滿		31~40		41~50		51~60		61~70		71~80		81~90		90t以上		計	
	木船	鋼船	木船	鋼船	木船	鋼船	木船	鋼船	木船	鋼船	木船	鋼船	木船	鋼船	木船	鋼船	木船	鋼船
組 合 員			11		40	2	3	3	1	12		24		11		16	55	68
非組合員	40		6		10		1	1		3		2		8		2	57	16
計	40		17		50	2	4	4	1	15		26		19		18	112	84
	40		17		52		8		16		26		19		18		196	

서 月別로 原價構成比率, 原價要素의 趨勢比率, 漁獲物 箱子當單位原價, 賣出原價率로서 나타내었는데, 一般으로 原價를 比較하는 경우, 原價數字를 金額으로 比較하는 것 보다 比率로서 比較하는 것이 알기 쉽다.³⁾ 라는 點으로 보아 原價 算定에 있어서 모두 比率로서 나타 내었다.

여기에서 調査된 原價要素의 項目은 漁獲物(箱子數와 kg)의 原價計算을 위해 考慮한 原價要素構成은 다음과 같다.

1. 材料費

- ① 船具費 ② 漁具費 ③ 燃料費 ④ 賃金代 ⑤ 容器代

2. 勞務費

- ① 給料 및 賃金 ② 福利厚生費 ③ 主·副食費

3. 經 費

- ① 船價償却費 ② 修繕費 ③ 船員共濟料 ④ 租稅公課

4. 販賣費 및 一般管理費

- ① 販賣手數料 ② 販賣管理費

끝으로 原價構成要素의 費用項目으로서 利益管理를 實施하기 위해서 原價管理를 위한 損益分岐點分析을 試圖 하였다.

Ⅲ. 近海鮫鱓網漁業의 概況

鮫鱓網漁業은 黃海 및 東支那海에서 大部分의 漁場이 形成되고 있는 代表的인 漁業으로 單一魚種을 漁獲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種을 大量 混獲하는 漁業으로서, 特히 우리나라 西海岸 延坪島를 中心으로 하여 4월부터 6월까지 主漁場을 이루고, 또 6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3) 車均澤: 經營分析例解, 1969, p. 278.

近海鮫鱈網漁業經營의 原價實態에 關한 研究

지에는 東支那海를 中心으로 操業하고 있으며, 主對象 魚族은 底棲魚族으로, 조기, 갈치, 병어等 이다. 生産量은 1962年度에 36,206%에서 계속 增加 趨勢를 보여, 1967년에는 109,837%, 그리고 1972년에는 133,755%이었고, 1977년의 生産實績은 213,004%으로서, 前年度 203,860%에 比하여 4.5%가 增加 되었으며⁴⁾ 沿近海漁業의 重要業種의 하나로서 鮫鱈網漁業을 들 수 있다.

한편 鮫鱈網漁業은 西紀 1895年頃 日本人이 九州長崎地方으로 부터 우리나라 西海岸 조기를 對象으로 出漁團을 組織하여 操業한 것이 始初가 되었다⁵⁾ 日本이 我國에 通漁를 하게되자 日本官民이 通漁를 獎勵하여 日本漁民들이 洪水와 같이 我國 沿岸에 밀어 닥쳤다. 그중 佐賀縣 有明海岸의 通漁民들은 漁況條件이 自國과 類似한 西南海岸에서 鮫鱈網漁業을 企圖하였다. 그들은 我國 南西海岸에 適合한 漁具研究에 苦心한 結果, 1909년에는 오늘날 我國의 西南海岸에서 使用되고 있는 漁具와 같은 構造의 漁具로 改良하는데 成功 하였다. 그 當時(1909年)의 日本 通漁隻數는 4隻, 1915년에는 311隻, 1920년에는 約1,200隻에 達하였다고 하며, 이 中 200~300隻은 我國 漁民이 操業한 것으로 看做 된다는 것이다. 그後 本漁業에 進出하는 漁船隻數는 急進적으로 增加하여 1940年代에는 約 6,000隻에 達하였는데 이 中 日本人 經營隻數 100隻 未滿으로 韓國人의 漁業으로 그 樣相이 一變 하였다⁶⁾ 그리하여 우리나라 사람도 本漁業을 經營하는 者가 年年 增加하여 오늘날 우리나라 水産業上 重要한 位置를 占하고 있다. 따라서 鮫鱈網漁業은 西海岸에서 盛하고 있는 重要한 漁業으로서 每月 陰歷 8日의 보름사리와 23日의 그믐사리를 前後하여 月 2회에 걸쳐 出漁하며, 他漁業에 比하여 在來式인 漁業이면서도, 오늘날까지 安全하게 維持, 經營되어 오고 있다.

近海鮫鱈網漁業은 側網 2枚와 腹網 等 4枚의 網地와 網口에는 수해와 암해로서 展開 시켰다. 網의 總長은 50~75m이며, 網口의 수해와 암해는 20~25m 이다. 網目은 網口部合의 約 30cm 目에서 魚捕部로 내려 갈수록 작아져서 끝에서는 3~4cm가 된다. 수해와 암해는 各各 대나무와 참나무로 되는 경우와 近來에 와서는 鐵파이프를 使用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4本の 걸이줄이 나와 다시 2本の 高광줄로 연결되어, 다시 釣줄에 연결 되었으며, 釣줄에서는 배걸이줄이 船과 連結 되었다. 이러한 網은 Wire 및 마닐라 Rope 9~18m/m 目を 使用한다. 投網時에는 釣을 投下한 後 引廻網을 調整하여, 船을 潮流에 橫直이 되도록 하여 魚捕部로 부터 網을 投下한다. 投網이 끝나면 다시 船을 潮流方向과 一致 시키며, 揚網時에는 停潮時에 다시 引廻網을 調整하여 潮流에 橫直 시킨 後 남바줄을 감아 수해 및 암해를 船側에 붙이고, 魚捕部를 Winch로 올린다. 操業은 1日 2回하며 操業期間은 大潮時 前後의 約 10日間을 두고, 操業한다. 때에 따라서는 1隻이 2~3續의 漁網을 同時에 投網,

4) 水産廳：水産業 動向에 關한 年次報告書, 1978, p. 58.

5) 國立水産振興院：重要漁業動態調查報告(漁船, 漁具編), 1961, p. 41.

6) 韓國經濟開發研究所：韓國水産業의 現況(上卷), 1966, p. 258.

揚網도 한다⁷⁾

近海鮫鱈網漁業은 水産業法 第11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水産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할 漁業으로 水産業法施行令 第14條 3의 第10號에 의하면 船舶 總噸數 10噸以上の 動力船에 의하여 鮫鱈網을 使用하여 採捕하는 漁業이라 規定하고 있다.

全北 群山地方의 近海鮫鱈網漁業은 196隻 (1978年 8月 31日 現在)으로 鋼船이 43%인 84隻, 木船이 57%인 112隻이며, 群山地方의 漁船勢力을 表示하면 (表-1)과 같다.

本漁業의 隻當從事者數는 10~11名이고 操業漁場은 주로 東支那海이며, 南支那海까지도 出漁하여 操業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操業은 年中 可能하여 보름사리와 그믐사리를 前後한 月 2회에 걸쳐 出漁 함으로 操業期間은 年 24회가 普通이고, 1회 出漁에 操業日數는 大概 6日, 引網回數는 1日 1~2回이며, 航海日數는 群山港에서 東支那海까지 約 50時間이 所要 되므로 往復 4日 程度이고, 漁獲物販賣로 부터 出漁準備를 위한 所要日이 대개 5日이고 보면, 1航次 出漁期間은 15日 程度 所要되어 보름으로 看做되고 있는 것이다.

群山港 延入港 隻數를 보면 (表-2)와 같다.

本漁業의 群山地方, 1975年~1978年까지 4個年間, 隻當 年平均漁獲量은 112,687kg으로, 1976年은 169,483kg을 漁獲하여 가장 높고, 隻當 年平均總委販金額은 19,663,400원이며, 1976年은 24,321,215원으로 가장 높은 實情을 보여 주고 있다. 具體적으로 隻當漁獲量 및 隻當委販金額을 表示하면 (表-3과) (表-4)와 같다.

〈表-2〉 近海鮫鱈網漁業의 入港隻數(群山港)

年度	月別												合計	平均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9 7 5	36	28	130	114	159	162	219	224	166	162	124	87	1,611	134
1 9 7 6	45	70	74	92	83	89	97	98	97	80	91	102	1,018	85
1 9 7 7	106	101	131	149	202	213	218	223	70	140	94	64	1,711	143
1 9 7 8	136	114	202	219	234	253	212	203	232	237	234		2,216	207
平 均	81	78	134	144	170	179	187	187	141	155	136	84		

또한 1975年~1978年 사이의 月別 漁獲變動을 把握하기 위하여 季節變動指數를 算出한 結果, 7月에서 11月 사이가 112.2~239.0의 높은 季節變動指數를 나타낸데 反하여 12월부터 減少되어 4월까지 32.1~60.4의 낮은 指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本漁業은 一般적으로 夏季와 秋季가 漁獲高가 높아서 好況을 이루나, 冬季와 春季는 漁獲高가 낮은 實情이다. 다음은 月別 總委販金額에서 月別 漁獲量箱子數로 나눈 箱子當 魚價로서, 魚價의 季節變動을 把握하기 위하여 季節變動指數를 算出한 結果, 漁獲量과는 正反對로 1月에서 6月

7) 國立水産振興院, 近海鮫鱈網水産業協同組合; 黃海 및 東支那海漁場圖, 1977, p. 28.

近海鮫鱈網漁業經營의 原價實態에 關한 研究

<表-3>

隻當 漁獲量

(單位: kg)

年度	1	2	3	4	5	6	7
1 9 7 5	4,870	4,163	4,466	4,544	7,020	11,029	5,098
1 9 7 6	9,500	6,323	5,805	7,641	11,327	13,697	20,585
1 9 7 7	8,247	5,888	3,945	4,128	6,208	4,981	8,350
1 9 7 8	5,940	7,330	3,448	4,185	7,056	7,577	9,337
平 均	7,139	5,926	4,416	5,126	7,903	9,321	10,843
季節變動指數	60.4	47.9	41.5	50.5	79.8	91.2	112.2

年度	8	9	10	11	12	合計	平均
1 9 7 5	5,784	6,589	9,795	15,026	2,821	81,205	6,767
1 9 7 6	22,238	18,911	31,139	15,263	7,054	169,483	14,124
1 9 7 7	8,093	28,661	31,338	12,605	2,226	124,670	10,389
1 9 7 8	7,126	8,421	6,894	8,084		75,389	6,854
平 均	10,810	15,643	19,792	12,745	4,037		
季節變動指數	154.1	158.9	239.0	132.1	32.1		

<表-4>

隻當 委販 金額

(單位: 元)

年度	1	2	3	4	5	6	7
1 9 7 5	804,352	950,566	887,905	881,189	1,081,172	1,233,242	465,815
1 9 7 6	2,422,440	984,822	957,730	1,850,383	1,981,875	1,654,892	1,996,659
1 9 7 7	1,237,020	961,300	828,335	1,039,135	1,332,000	1,404,578	1,586,572
1 9 7 8	1,706,852	2,443,493	1,148,071	1,672,193	1,789,392	1,168,632	2,128,639
平 均	1,542,666	1,335,045	955,510	1,360,725	1,546,110	1,365,336	1,542,171
季節變動指數	124.7	100.5	113.4	148.6	114.7	113.9	74.2

年度	8	9	10	11	12	合計	平均
1 9 7 5	507,830	691,010	1,044,399	1,625,505	585,457	10,749,442	895,782
1 9 7 6	2,334,708	2,973,112	4,357,664	1,828,642	978,288	24,321,215	2,026,768
1 9 7 7	1,804,821	4,688,257	3,657,836	2,509,033	280,441	21,329,328	1,777,444
1 9 7 8	2,094,637	2,477,052	2,627,353	2,997,301		22,253,615	2,023,056
平 均	1,685,499	2,707,358	2,921,813	2,240,120	614,729		
季節變動指數	77.8	84.8	75.8	80.5	91.6		

사이가 100.5~148.6의 높은 季節變動指數를 나타냈고, 反對로 7月에서 11月 사이는 74.2~84.8의 낮은 指數를 나타낸 點으로 보아, 魚價는 一般的으로 冬季와 春季에 높고, 夏季와 秋季에는 낮은 편이어서, 漁獲量과는 逆相關關係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漁獲量의 경우는 季節變動指數가 甚한 격차를 보여, 季節變動의 起伏이 큰데 비하여, 魚價는 季節變動指數의 差異가 적게 나타나고 있어 年中 季節變動의 幅이 좁은 現象을 보여 주고 있는 傾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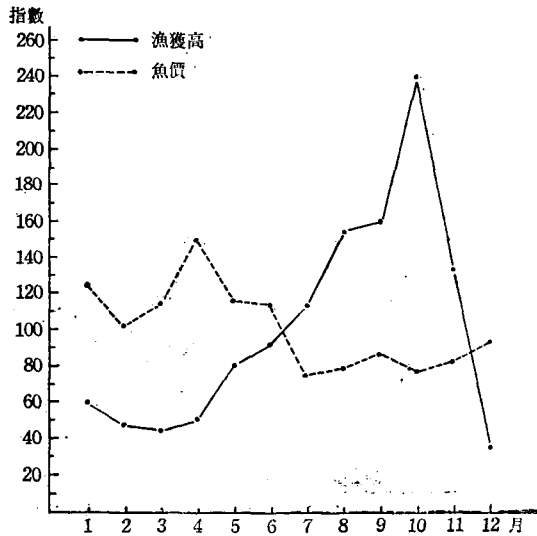
1975年~1978年까지의 4個年間 漁獲量과 魚價를 12個月 移動平均法의 算定方法에 의하여⁸⁾ 算出한 季節變動指數를 圖示하면, (圖-1)과 같다.

IV. 近海鮫鱧網漁業의 原價分析

1. 原價要素別分析

1) 材料費

製造工業은 材料에 一定한 加工을 하여 製品을 生産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材料는 生産의 第一要素이며, 廣義로는 生産에 參加하여 消費되는 모든 物質的 素材를 말한다. 즉 材料는 一定한 製造企業이 生産에 消費할 目的으로 外部에서 購入한 素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⁹⁾ 製品生産에 있어서 製品의 特性이나 形態를 構成하는 直接, 間接의 物質的要素에 對한 經濟價値額을 材料費라 한다. 本漁業에서 材料費는 船具費, 漁具費, 燃料費, 일음代, 容器代로서 構成되어 있다.



〈圖-1〉 漁獲量 및 魚價의 季節變動

船具費는 船體, 機關, 甲板, 無電機, 魚探機 等に 必要한 消耗性用品 및 材料의 購入代金を 말하며, 年總支出額은 1,209,744원 (月平均支出額, 100,812원)으로 總原價의 3.2%에 해당되며, 月別로 보면, 가장 支出이 많은 달은 2月 (170,540원), 9月 (255,679원)로서, 主로 船體 및 機關修理의 頻度가 높은 달이며, 가장 支出이 적은 달은 8月 (27,000원)이나, 普編的으로 材料費總額의 0.6%以下로 支出되고 있는 傾向이다.

漁具費는 網紙, rope類, 漁網糸, 浮子, 其他의 消耗性 漁具附屬品에 대한 購入代金を 말

8) 鄭英鎭: 近代統計學의 理論과 實際, 1970, pp. 250~252.

9) 尹根鎭: 前揭書, p. 78.

近海鮫鱈網漁業經營의 原價實態에 關한 研究

하며, 年總支出額은 3,287,678원(月平均支出額 273,973원)으로 總原價의 8.6%로서 費用項目中 높은 편이다. 이는 漁具中 뜀과 발돋 役割인 수해와 암해를 從來에는 대나무와 참나무로 使用하던 것을 漁具改良에 따라 수해와 암해를 鐵파이프로 改良하여 使用하게 되므로 連結된 鐵파이프를 使用하다 보면, 水壓이 높은 깊은 바다에서는 견디지 못하여 자주 修理를 要하게 되며, 그에 따른 附屬品의 使用이 많아 材料費가 增加되고, 또한 漁網은 流失의 頻도가 잦고, 오래 使用하다 보면 자주 補網을 하기 때문에 網糸等 이에 따른 費用 支出이 많게 된다. 月別로 보면 1月(560,715원) 9月(558,010원)이 가장 支出이 많은 달로서 주로 漁具를 새로 製作하는 경우이며, 그 以外의 달은 수해와 암해의 修理에 의한 附屬品의 材料費用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燃料費는 重油, 輕油 등의 購入代金과 潤滑油費로서 消耗된 油類費 一切의 金額을 말하며 年總支出額은 5,772,139원(月平均支出額 481,011원)으로, 總原價의 15.2%로서 支出費用項目中 가장 많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편에 屬하며, 이는 漁場距離가 遠隔한데다가 船員의 資質이 낮아, 漁場에서의 魚群探索이 容易하지 않아 漁場移動에 따른 航海時間이 너무 길어서 油類의 消耗가 自然히 많아진다는 點으로 보아 燃料費의 過大支出 現象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燃料의 消耗는 一般의으로 航海 및 操業日數와 比例關係를 가지고 있으므로 燃料費는 月別로 볼 때, 本漁業이 漁場距離가 거의 같고, 月 2회의 出漁回數가 一定 하였으므로, 月別, 支出額은 大同小異하고, 月 1회의 出漁回數를 가진 2月(266,748원)만이 가장 적게 나타 났다.

얼음代는 漁獲物處理用(氷藏)의 얼음 購入代金으로 年總支出額은 2,313,203원(月平均支出額 192,767원)이고, 總原價의 6.1%에 해당되며, 月別로 보면 6月~10月(248,090원~399,745원) 사이인 夏季와 秋季에 많은 支出額을 보였으며, 反對로 支出額이 적은 달은 2月(27,000원) 3月(47,738원)로서, 主로 冬季와 春季이다. 勿論 얼음의 盛需期인 夏季가 많이 必要함은 當然하나, 이는 漁獲量과 關係되는 편으로 漁獲高가 높은 夏季와 秋季에 支出額이 많고 漁獲高가 낮은 冬季와 春季에 支出額이 적게 나타난 實情이다.

容器代는 魚箱子の 購入代金を 말하며 年總支出額은 1,984,475원(月平均支出額 165,373원)이고, 總原價의 5.2%에 해당되며, 月別로 보면 6月~10月(185,000원~440,875원) 사이가 支出額이 많고, 1月~3月(50,000원~67,500원) 사이가 支出額이 적게 나타났다. 이는 얼음代와 같은 支出 現象으로 漁獲量과 比例하여 漁獲高가 높을수록 魚箱子の 需要가 많기 때문에 漁獲高가 높은 夏季와 秋季에 支出額이 많고, 漁獲高가 낮은 冬季와 春季에 支出額이 적은 傾向이다.

材料費의 年總支出額은 14,567,239원(月平均支出額 1,213,937원)으로 總原價의 38.3%, 生産原價의 41.1%를 차지하여 總費用中 3分の 1 以上이 넘는 實情이다. 材料費中에서는 燃料費가 39.6%로서 가장 많이 支出되었으며, 다음은 漁具費 22.6%, 얼음代 15.9%, 容器

代 13.6%, 船具費 8.3%의 構成比率로 支出 되었다. 또한 月別로 보면, 8月~10月 사이가 11.2%~12.7%(1,624,103원~1,857,064원)로서 가장 많이 支出 되었으며, 가장 적은 달은 2月인 4.1%(597,128원)로서 가장 많이 支出된 달의 3分の 1 程度이다. 그러므로 本漁業의 材料費는, 漁撈事業活動이 活潑하여 漁獲高가 높은 夏季와 秋季에 支出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材料費의 支出이 많은 까닭은, 漁具 整備에 의한 網糸等 附屬材料의 使用이 많고 또한 漁場의 距離가 遠隔하고, 船員들의 漁場探索이 容易치 않아, 航海時間이 길어지므로 油類의 消耗가 自然히 增加 되어, 漁具費와 燃料費의 支出이 많기 때문이다.

本漁業의 材料費 原價要素의 構成比率를 表示하면 (表-5)와 같다.

2) 勞務費

製造는 一定한 原料에 對하여 人間의 勞動을 加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人間의 勞動 없이는 生産은 되지 않으며 勞動은 生産의 積極인 要素이다.

製造企業은 그의 製造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人間의 勞動力을 購入한다. 그에 대하여 支拂되는 報酬가 賃金이다. 이러한 人間의 勞動의 消費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原價計算上의 原價는 勞務費가 된다. 즉 特定한 個別生産 또는 工程(部門)에 얼마의 勞務費라는 原價가 消費 되었느냐를 計算하는 原價計算上의 問題가 되는 것이다.¹⁰⁾ 本漁業에서의 勞務費는 給料 및 賃金, 福利厚生費, 主·副食費로서 構成되어 있다.

給料 및 賃金은 船員步合率(깃가립 賃金別)로서 收益分配制에 의한 船員給與의 該當金額 또는 月給制에 의한 船員給料의 支出額을 말한다. 群山地方에 있어서 鮫鱈網漁業의 경우는 每航次別 總委販金額에서 費用項目中 共同經費로 燃料費, 일음代, 容器代, 主食費의 4가지 費用을 공제한 金額을 가지고 3:7의 比率로서 配分하여, 3은 船員 측, 7은 船主측의 몫인 것이다. 또한 船員들의 몫에 있어서는 船員들에 配分된 總金額에서 船員數보다 1몫이 더한 數로 나누어진 몫이 船員 1인의 몫이 되며, 船員 몫 中 남은 1몫과 船主側에서 船員 1 몫만큼 더 負擔하여, 船長과 機關長에게 各各 1 몫씩 더 配分되고 있다. 즉 船長과 機關長은 他 船員에 비하여 1 몫이 더 많은 셈이다.

給料 및 賃金の 年總支出額은 10,779,084원(月平均支出額, 898,257원)으로 總原價의 28.3%로서 費用項目中 가장 많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從來의 鮫鱈網漁船이 普遍的으로 20~30噸級이어서, 主로 沿岸漁業으로 資質이 낮은 船員들로서 構成되어 營爲해 오던 것을 近來에 와서는 船幅이 大量으로 增加하여 平均70噸級以上の 鋼船이 建造되어 漁船의 規模가 增加되고, 이에 따라 計器自体가 機械體系化되고 있어, 近海漁業으로 轉換되어 가므로, 從來의 資質이 낮은 船員으로서의 감당하기가 어려워져 船員 需給에 隘路를 가져오는 便이어서 船主측에서는 資質을 갖춘 船員을 確保하기 위하여 努力을 하게 되므로 自然히 人件費의 上昇이라는 傾向을 가져오기 때문에, 많은 費用項目을 차지하게 된다. 月

10) 尹根鎭: 前掲書, p. 114.

近海鮫鱈網漁業經營의 原價實態에 關한 研究

〈表-5〉 材 料 費 (單位: 圓)

原價要素	1	2	3	4	5	6	7
船 具 費	(0.9) 124,403	(1.2) 170,540	(0.5) 65,965	(0.6) 88,061	(0.6) 86,175	(0.4) 56,800	(0.6) 81,654
漁 具 費	(3.9) 560,715	(0.5) 65,340	(2.7) 398,954	(2.9) 424,004	(1.3) 188,015	(0.6) 93,565	(0.7) 103,225
燃 料 費	(3.9) 555,041	(1.8) 266,748	(3.4) 146,488	(3.9) 559,413	(3.0) 435,890	(4.6) 662,345	(3.1) 457,518
얼 음 代	(0.5) 66,413	(0.2) 27,000	(0.3) 47,738	(0.5) 76,390	(0.7) 95,775	(1.7) 248,090	(1.9) 283,010
容 器 代	(0.3) 50,000	(0.5) 67,500	(0.4) 63,500	(1.3) 183,750	(0.5) 78,250	(1.9) 279,500	(1.5) 215,500
合 計	(9.3) 1,356,572	(4.1) 597,128	(7.3) 1,066,372	(9.1) 1,331,618	(6.1) 884,105	(9.2) 1,340,300	(7.8) 1,140,907

原價要素	8	9	10	11	12	合 計	平 均
船 具 費	(0.2) 27,000	(1.8) 255,679	(0.9) 135,110	(0.5) 69,696	(0.3) 48,661	(8.3) 1,209,744	(0.7) 100,812
漁 具 費	(3.1) 447,365	(3.8) 558,010	(1.0) 146,110	(0.7) 96,040	(1.4) 206,335	(22.6) 3,287,678	(1.9) 273,973
燃 料 費	(3.5) 511,206	(3.4) 496,325	(3.7) 534,665	(2.9) 420,358	(2.6) 382,415	(39.6) 5,772,139	(3.3) 481,011
얼 음 代	(3.0) 442,932	(2.5) 362,050	(2.7) 399,745	(1.1) 159,575	(0.7) 104,485	(15.9) 2,313,203	(1.3) 192,767
容 器 代	(1.3) 195,600	(1.3) 185,000	(3.0) 440,875	(0.6) 83,000	(11.0) 142,000	(13.6) 1,984,475	(1.1) 165,373
合 計	(11.2) 1,624,103	(12.7) 1,857,064	(11.4) 1,656,505	(5.7) 828,669	(6.1) 883,896	(100) 14,567,239	(8.3) 1,213,937

註: () 안의 數字는 百分率임.

別로 보면, 가장 支出額이 많은 달은 5월(1,515,754원), 11월(1,510,967원)이고, 3월(208,320원)은 가장 적게 支出額이 表示되어 있는데, 大体로 漁獲高가 높은 6월~11월 사이인 夏季와 秋季에 支出額이 많은 實情이다. 즉 給料 및 賃金은 能率給制로서, 月別 委販金額과 關係 되므로, 漁獲量이 많고, 魚價가 높을수록 船員들에게 支給되는 給料은 比例하여 많아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漁業經營의 賃金形態가 一般製造業經營과는 달리 固定給制를 採擇치 않고, 能率給制를 擇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能率給制인 計가림制(收益分配制)의 賃金形態를 擇하고 있는 것은 漁業經營의 特殊性인 成果不確實이라는 要因이 크게 支配되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福利厚生費는 船員들에 대한 醫療費, 藥品代, 理容料, 酒代 및 담배값 등의 支給額을 말

수 산 경 영 론 집

하며 年總支出額은 635,495원(月平均支出額 52,958원)이고, 總原價의 1.7%에 해당되며, 月別로 보면 1月(99,600원)과 7月(87,300원)에 支出額이 가장 많을 뿐, 그 以外의 달은 거의 支出額이 비슷하여 이는 大体로 每月 一定한 支出 現象을 이루고 있는 便이다.

主·副食費는 主食費인 쌀, 보리등의 購入代金과 副食費인 김치, 간장, 된장 및 調味料 등의 購入代金を 合한 支出額을 말하며, 年總支出額은 1,325,695원(月平均支出額 110,475원)이고, 總原價의 3.7%에 해당되며, 月別로 보면, 가장 支出額이 많은 달은 1月(173,970원)이나, 그 以外의 달은 支出額이 大同小異하게 나타 난 點으로 보아, 이는 每月 보름사리와 그믐사리를 前後한 月 2회의 出漁日數가 거의 一定하기 때문이다.

勞務費의 年總支出額은 12,740,274원(月平均支出額 1,061,690원)으로 總原價의 33.5%이며, 生産原價의 35.9%를 차지 했으며, 勞務費中에서는 給料 및 賃金이 84.6%로서 大部分이 차지 하였고, 主·副食費는 10.4%, 福利厚生費는 5%의 構成比率로 支出된 셈이다. 또 한 月別로 보면 10月(1,654,687원)이 가장 많은 支出額으로서, 秋季가 높은 傾向이고, 反對로 낮은 달은 3月(353,850원)인 春季이다. 그러므로 勞務費는 漁獲實積의 漁獲量과 魚價에 따른 委販金額과 航海·操業日數에 比例하여 나나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本漁業의 勞務費原價要素의 構成比率를 表示하면 (表-6)과 같다.

3) 經 費

經費는 材料費, 勞務費를 除外한 製造關係의 原價를 말한다. 즉 製品만을 위하여 消費된 것이 明確한 經費를 말하며, 大多數의 經費는 모두 間接費의 性格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¹¹⁾ 本漁業에서의 經費는 船價償却費, 修繕費, 船員共濟料, 租稅公課로서 構成되어 있다.

船價償却費는 固定資産의 減價償却會計에 의하여 處理되는 費用配分の 過程에 따른 期間費用의 計算 過程이라 할 수 있다. 즉 減價償却會計란 固定資産이 時間의 經過나 使用 等に 依하거나 (物理的原因) 또는 舊式化, 不適當, 不適應 等に 依하여 (機能的原因) 그 價値가 減少된 것을(減價) 어떤 人爲的인 方法에 의하여 計算하고 그 減價額을 當該 資産의 帳簿價額에서 減額 除去하는 會計節次를 말한다. 水産業에서와 같이 많은 固定資産을 保有하고 있는 企業에서는 固定資産의 減價償却會計는 重要하며, 또 會計의 正確性, 信憑性 如否는 減價償却會計에서 큰 影響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減價償却會計의 目的은 正確한 損益計算을 하고, 貸借對照表에 眞實性이 있는 計數를 表示하며, 企業資本을 堅實히 維持 하려는데 그 窮極의 目的이 있다.¹²⁾

여기에서 本人은 船價償却費를 算出하는 方法으로서 定額法을 適用하였으며, 本漁船은 鋼船이기에 耐用年數를 10年, 殘存價額은 取得原價의 10%로 看做하여 算出公式:

11) 尹根鎬: 前掲書, p. 30.

12) 姜吉遠: 水産簿記, 1968, pp. 100~101.

近海鮫鱈網漁業經營의 原價實態에 關한 研究

〈表-6〉 勞 務 費 (單位: 元)

原價要素	1	2	3	4	5	6	7
給料 및 賃金	(10.2) 1,301,796	(3.7) 469,157	(1.6) 208,320	(3.9) 489,949	(11.9) 1,515,754	(5.4) 692,124	(5.6) 707,207
福利 厚生 費	(0.8) 99,600	(0.3) 39,975	(0.4) 54,900	(0.4) 46,000	(0.3) 42,800	(0.3) 43,520	(0.7) 87,300
主 副 食 費	(1.4) 173,970	(0.7) 87,950	(0.7) 90,630	(0.7) 92,315	(0.8) 102,400	(0.8) 103,000	(0.8) 111,175
合 計	(12.4) 1,575,366	(4.7) 597,082	(2.8) 353,850	(4.9) 628,264	(13.0) 1,660,954	(6.6) 838,644	(7.1) 905,682

原價要素	8	9	10	11	12	合 計	平 均
給料 및 賃金	(8.6) 1,091,044	(9.6) 1,224,553	(11.9) 1,510,967	(9.2) 1,173,004	(3.1) 395,209	(84.6) 10,779,084	(7.1) 898,257
福利 厚生 費	(0.5) 68,800	(0.4) 54,500	(0.2) 26,800	(0.3) 39,500	(0.3) 31,800	(5.0) 635,495	(0.4) 52,958
主 副 食 費	(1.0) 121,475	(1.0) 129,855	(1.0) 117,100	(1.0) 119,325	(0.6) 76,500	(10.4) 1,325,695	(0.8) 110,475
合 計	(10.1) 1,281,319	(11.1) 1,408,908	(13.0) 1,654,867	(10.4) 1,331,829	(3.9) 503,509	(100) 12,740,274	(8.3) 1,061,690

註: () 안의 數字는 百分率임

取得原價 - 殘存價額 / 耐用年數 × 1/21 = 減價費¹³⁾에 의하여 計算하였다. 그러므로 年船價償却費는 3,590,580원으로 算出 됐으며 總原價의 9.4%에 해당된 셈이며, 月別船價償却費는 299,215원으로, 費用配分되며, 總原價의 0.8%에 해당된 金額이 減價된 것이다.

修繕費는 船體, 機關, 漁具, 船舶機器 等에 대한 修繕維持費 一切를 合하여 支出된 修理費를 말하며, 年總支出額은 4,421,445원(月平均支出額 368,454원)으로 總原價의 11.6%로서, 費用項目中 많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機關修理 및 整備가 每航次別 部分的 修理의 頻度가 잦은 便으로 이에 따른 修理費의 支出이 많았으며, 漁具에 있어서도 수해와 압해를 大部分 連結된 鐵파이프의 改良漁具를 使用하고 있기 때문에 水壓에 견디지 못할 경우에는 자주 破損되므로 이때마다 修理를 要하는 便이 많고, 漁網은 자주 補網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修理費의 費用項目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傾向이다. 또한 月別로 보면 1月(1,134,210원), 2月(558,260원)이 가장 支出이 많은 달로서, 이는 老朽化된 機關修理와 整備를 實施 하였고, 漁具를 새로 補網하였기에 他月에 비하여 支出額이 높았다. 가장 支出額이 낮은 달은 3月(20,666원)이고, 주로 그 以外의 달은 每航次別 部分的으로 機關修理와 漁具의 수해·압해의 修理 및 補網費로서 支出되었던 實情이다.

13) 任翊淳: 財務管理, 1970, p. 86.

수 산 경 영 본 집

船員共濟料는 水産業協同組合의 水産共濟事業中, 特別會計로서 實施하고 있다. 水産業協同組合의 共濟事業이란 水産業의 災難을 相互共濟함으로써 水産業의 維持·發展을 期하는 同時에 漁民의 生命과 財産을 保護하여, 生活의 安全을 圖謀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事業을 말하며 共濟事業은 실로 水産業上의 保險事業이라 할 수 있는데, 水産共濟에는 漁船共濟, 船員共濟, 施設共濟의 3種이 있다. 이 中 船員共濟는 漁船의 乘務員을 對象으로 한 共濟로서 共濟期間은 滿 1年이며, 共濟割은 全額 一時拂로 하되, 不得已한 경우에는 2회에 限하여 分納할 수 있다.¹⁴⁾ 本漁業에서 船員共濟料는 1人當·年 10,000원이었고, 年總支出額은 100,000원으로서 總原價의 0.2%에 해당되며 月別 支出額은 8,333원인 셈이다.

租稅公課는 對象船舶에 대한 許可·免許 및 船稅, 財産稅, 消防稅, 入出港, 公課金 등을 말하나, 本漁業에서는 주로 入出港費 만을 나타 냈고, 支出費用項目中 가장 적은 比重을 차지 하였으며, 年總支出額은 57,660원(月平均支出額 4,805원)으로서 總原價의 0.2%에 不過

〈表-7〉 經 費 (單位: 圓)

原價	經 費						(單位: 圓)
要素月別	1	2	3	4	5	6	7
船價償却費	(3.7) 299,215	(3.7) 299,215	(3.7) 299,215	(3.7) 299,215	(3.7) 299,215	(3.7) 299,215	(3.7) 299,215
修繕費	(13.9) 1,134,210	(6.8) 558,260	(0.3) 20,666	(2.9) 238,650	(4.1) 338,500	(1.7) 135,525	(4.6) 377,400
船員共濟料	(0.1) 8,334	(0.1) 8,334	(0.1) 8,333	(0.1) 8,333	(0.1) 8,333	(0.1) 8,333	(0.1) 8,334
租稅公課	(0.02) 1,650	(0.02) 1,400	(0.02) 2,000	(0.03) 2,050	(0.2) 17,800	(0.1) 4,050	(0.1) 4,015
合 計	(17.7) 1,443,409	(10.6) 867,209	(4.1) 330,214	(6.7) 548,248	(8.1) 663,848	(5.5) 447,123	(8.4) 688,964

原價要素	月別						合計	平均
	8	9	10	11	12			
船價償却費	(3.7) 299,215	(3.7) 299,215	(3.7) 299,215	(3.7) 299,215	(3.7) 299,215	(3.7) 299,215	(44.0) 3,590,580	(3.7) 299,215
修繕費	(3.8) 312,462	(3.7) 299,797	(5.3) 431,134	(3.7) 301,146	(3.4) 273,695	(3.4) 273,695	(54.1) 4,421,445	(4.5) 368,454
船員共濟料	(0.1) 8,334	(0.1) 8,333	(0.1) 8,333	(0.1) 8,333	(0.1) 8,333	(0.1) 8,333	(1.2) 100,000	(0.1) 8,333
租稅公課	(0.1) 4,000	(0.1) 8,200	(0.1) 4,950	(0.03) 2,795	(0.1) 4,750	(0.1) 4,750	(0.7) 57,660	(0.06) 4,805
合 計	(7.6) 624,011	(7.5) 615,545	(9.1) 743,632	(7.5) 611,489	(7.2) 585,993	(7.2) 585,993	(100) 8,169,685	(8.3) 680,807

註: () 안의 數字는 百分率임.

14) 姜吉遠: 前掲書, pp. 336~337.

近海鮫鱈網漁業經營의 原價實態에 關한 研究

하다. 月別로 보면 그의 비슷한 支出 傾向으로, 月別 入出港 回數가 一定 하였기 때문이다.

經費이 年總支出額은 8,169,685원(月平均支出額 680,807원)으로 總原價의 21.5%이며, 生産原價의 23% 支出構成率을 나타냈다. 經費中에서는 修繕費가 54.1%로서 半以上을 占하여 가장 많이 支出 되었고, 다음은 船價償却費 43%, 船員共濟料 1.2%, 租稅公課 0.7%의 構成比率로 支出 되었다. 月別로 보면 1月(1,443,409원)이 가장 많이 支出되었고 3月(330,214원)이 가장 적게 支出된 月인데, 經費는 修繕費에 의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大幅 修理 整備를 實施했던, 1月, 2月이 自然히 支出額이 많을 것이고, 그로 因한 3月은 別로 修理를 要하지 않았기에 가장 적게 支出된 것이다. 즉 經費는 本漁業의 機關, 漁具에 대한 修理 및 整備를 要하는 過大支出 現象이 나타 난 點으로 보아, 經費中 修繕費가 半以上을 占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要因이라고 보겠다.

本漁業의 經費原價要素의 構成比率를 表示하면 (表-7)과 같다.

4) 販賣費 및 一般管理費

販賣費는 本漁業의 委託販賣手數料를 말하며, 當月中 支拂한 委販手數料, 魚箱子揚陸費 및 配列費를 合한 金額으로서 年總支出額은 1,973,769원(月平均支出額 164,481원)이고, 總原價의 5.2%이며, 月別로 보면, 10月(273,409원)이 가장 많이 支出 됐으며 3月(58,961원)이 가장 적게 支出 되었다. 販賣手數料는 揚陸된 漁獲量의 委販金額에 따라 比例하여 支出 되며, 委販手數料는 總委販金額의 100分之4, 魚箱子揚陸費 및 配列費는 100分之 1.5로서 支拂되고 있다. 그러므로 本漁業에서는 委販金額이 높은 秋季에 販賣手數料가 많이 支出된 實情이다.

一般管理費는 販賣活動에 따른 販賣管理費를 말하며, 當月中 支拂한 寄附接待費, 旅費, 通信費 등을 合한 金額으로서 主로 寄附接待費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旅費, 通信費는 小額에 不過하다. 販賣管理費의 年總支出額은 559,686원(月平均支出額 46,641원)이고 總原價의 1.5%에 해당되며, 月別로 보면 3月(222,515원)이 他月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支出額을 나타 냈는데, 이는 船員의 不注意로 因한 寄附接待費의 過大支出 現象이 나타 났기 때문이며, 그 以外の 달은 거의 비슷한 支出 現象을 보이고 있는데, 主로 寄附接待費에 의한 支出이라 보겠다. 販賣費 및 一般管理費의 年總支出額은 2,533,455원(月平均支出額 211,121원)으로, 總原價의 6.7%이며, 販賣手數料는 77.9%, 販賣管理費는 22.1%의 構成比率를 形成하고 있다.

本漁業의 販賣費 및 一般管理費의 原價要素構成比率를 表示하면 (表-8)과 같다. 以上에서 近海鮫鱈網漁業을 原價要素別(材料費, 勞務費, 經費, 販賣費 및 一般管理費)로 分析 把握 하였으며 그 結果로서 生産原價 및 總原價를 綜合集計 算出 하였다. 本漁業의 生産原價漁撈事業原價) 및 總原價를 表示하면 (表-9)와 같다.

수 산 경 영 본 집

〈表-8〉 販賣費 및 一般管理費 (單位: 元)

原價要素	月別						
	1	2	3	4	5	6	7
販賣手數料	(8.4) 213,600	(3.3) 84,210	(2.3) 58,961	(4.3) 107,792	(9.4) 239,204	(6.0) 152,641	(5.7) 143,907
販賣管理費	(0.5) 11,020	(2.4) 60,250	(8.8) 222,515	(2.4) 61,435	(1.8) 45,035	(0.5) 11,850	(2.5) 62,625
合 計	(8.9) 224,620	(5.7) 144,460	(11.1) 281,476	(6.7) 169,227	(11.2) 284,239	(6.5) 164,491	(8.2) 206,532

原價要素	月別						
	8	9	10	11	12	合 計	平 均
販賣手數料	(8.1) 205,773	(8.6) 219,464	(10.8) 273,409	(7.7) 194,506	(3.1) 80,302	(77.9) 1,973,769	(6.5) 164,481
販賣管理費	(0.7) 17,400	(0.9) 22,425	(1.3) 33,733	(0.4) 9,848	(0.1) 1,550	(22.1) 559,686	(1.8) 46,641
合 計	(8.8) 223,173	(9.5) 241,889	(12.1) 307,142	(8.1) 204,354	(3.2) 81,852	(100) 2,533,455	(8.3) 211,121

註: () 안의 數字는 百分率임.

本漁業에서의 總原價는 38,010,653원(月平均總原價 3,167,554원) 이며, 總原價의 93.3% 에 해당되는 生産原價(漁撈事業原價)는 35,477,198원(月平均生産原價 2,956,433원)인 것이다. 月別로 보면 總原價 100에 대하여 9.9%~11.5%를 차지한 8月~10月(3,752,606원~4,362,146원) 사이인 夏季와 秋季에 많은 費用이 支出되고 있는 實情이다.

〈表-9〉 生産原價와 總原價 (單位: 元)

原價要素	月別						
	1	2	3	4	5	6	7
仕 料 費	(3.8) 1,356,572	(1.7) 597,128	(3.0) 1,066,372	(3.8) 1,331,618	(2.5) 884,105	(3.8) 1,340,300	(3.2) 1,140,907
勞 務 費	(4.4) 1,575,366	(1.7) 597,082	(1.0) 353,850	(1.7) 628,264	(4.7) 1,660,954	(2.4) 838,644	(2.6) 905,682
經 費	(4.1) 1,443,409	(2.4) 867,209	(0.9) 330,214	(1.6) 548,248	(1.9) 663,848	(1.2) 447,123	(1.9) 688,964
漁撈事業原價	(12.3) 4,375,347	(5.8) 2,061,419	(4.9) 1,750,436	(7.1) 2,508,130	(9.1) 3,208,907	(7.4) 2,626,067	(7.7) 2,735,553
販賣費 및 一般管理費	(0.6) 224,620	(0.4) 144,460	(0.7) 281,476	(0.5) 169,227	(0.8) 284,239	(0.4) 164,491	(0.5) 206,532
總 原 價	(12.1) 4,599,967	(5.8) 2,205,879	(5.3) 2,031,912	(7.1) 2,677,357	(9.2) 3,493,146	(7.3) 2,790,558	(7.7) 2,942,085

近海鮫鱧網漁業經營의 原價實態에 關한 研究

原價要素	8	9	10	11	12	合計	平均
材 料 費	(4.6) (4.3) 1,624,103	(5.2) (4.9) 1,857,064	(4.7) (4.3) 1,656,505	(2.3) (2.2) 828,669	(2.5) (2.3) 883,896	(41.1) (38.3) 14,567,239	(3.4) (3.2) 1,213,937
勞 務 費	(3.6) (3.4) 1,281,319	(4.0) (3.7) 1,408,908	(4.7) (4.4) 1,654,867	(3.7) (3.5) 1,331,829	(1.4) (1.4) 503,509	(35.9) (33.5) 12,740,274	(3.0) (2.8) 1,061,690
經 費	(1.8) (1.6) 624,011	(1.7) (1.6) 615,545	(2.1) (2.0) 743,632	(1.7) (1.6) 611,489	(1.7) (1.5) 585,993	(23.0) (21.5) 8,169,685	(1.9) (1.8) 680.807
漁撈事業原價	(10.0) (9.3) 3,529,433	(10.9) (10.2) 3,881,517	(11.4) (10.7) 4,055,004	(7.8) (7.3) 2,771,987	(5.6) (5.2) 1,973,398	(100) (93.3) 35,477,198	(8.3) (7.8) 2,956,433
販賣費 및 一般管理費	(0.6) 223,173	(0.7) 241,889	(0.8) 307,142	(0.5) 204,354	(0.2) 81,852	(6.7) 2,533,455	(0.5) 211,121
總 原 價	(9.9) 3,752,606	(10.9) 4,123,406	(11.5) 4,362,146	(7.8) 2,976,341	(5.4) 2,055,250	(100) 38,010,653	(8.3) 3,167,554

註：()의 上은 生産原價, 下는 總原價의 百分率임.

이런 點으로 보아 本漁業은 거의가 生産原價(漁撈事業原價)로서 投下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漁業生産에 投下되고 있다는 것은 本漁業이 漁撈事業費로서 營爲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本漁業은 夏季와 秋季에 있어서 漁撈事業活動이 活潑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經營實態의 한面을 보여 주고 있다.

本漁業의 生産原價(漁撈事業原價)의 構成比率과 總原價의 構成比率을 表示하면 (表-10)과 (表-11)과 같다.

2. 原價比較

1) 原價構成比率

原價構成比率은 原價要素와 總原價와의 比率로서, 總原價 100에 대하여 各 原價要素의 比重度의 産出이며, 原價變動 原因을 分析하는 資料를 제공해 주는 役割을 하는 것으로, 즉 原價變動의 原因分析 이다. 이는 每月別 原價要素中 가장 比重이 높은 原價를 찾아 내어, 그 原因을 把握 하는데 있다.

月別 總原價 100에 대하여, 3月(52.4%), 4月(49.7%), 6月(48%), 7月(38.8%), 8月(43.3%), 9月(45%), 12月(43%)은 材料費가, 1月(34.3%), 5月(47.6%), 11月(44.8%)은 勞務費가 2月(39.3%)은 經費의 比重이 높았고, 10月은 材料費와 勞務費가 共히 38%로서 높은 比重度를 나타냈다. 이러한 現象은 材料費의 경우 燃料費의 消耗가, 勞務費는 給料 및 賃金의 支出이, 經費는 修繕費의 支出이 當該月에 가장 많이 차지한 實情인 것이다.

한편 本漁業에 있어서 原價要素의 構成比率은 年總原價 100에 대하여 給料 및 賃金 28.3%, 燃料費 15.2%, 修繕費 11.6%, 船價償却費 9.4%, 漁具費 8.6%, 兪음代 6.1%, 容器

수 산 경 영 본 집

<表-10>

生産原價(漁撈事業原價)構成比率

(單位: %)

原價要素	月別	1	2	3	4	5	6	7
I. 材 料 費		(3.8)	(1.7)	(3.0)	(3.8)	(2.5)	(3.8)	(3.2)
船 具 費		0.4	0.5	0.2	0.3	0.2	0.2	0.2
漁 具 費		1.6	0.2	1.1	1.2	0.5	0.3	0.3
燃 料 費		1.6	0.7	1.4	1.5	1.2	1.8	1.3
일 음 代		0.2	0.1	0.1	0.2	0.3	0.7	0.8
容 器 代		0.1	0.2	0.2	0.5	0.2	0.8	0.6
II. 勞 務 費		(4.4)	(1.7)	(1.0)	(1.7)	(4.7)	(2.4)	(2.6)
給料 및 賃金		3.7	1.3	0.6	1.4	4.3	2.0	2.0
福利厚生費		0.3	0.1	0.2	0.1	0.1	0.1	0.3
主·副食費		0.5	0.2	0.2	0.2	0.3	0.3	0.3
III. 經 費		(4.1)	(2.4)	(0.9)	(1.6)	(1.9)	(1.2)	(1.9)
船價償却費		0.8	0.8	0.8	0.8	0.8	0.8	0.8
修繕費		3.2	1.6	0.1	0.7	1.0	0.4	1.1
船員共濟料		0.02	0.02	0.02	0.02	0.02	0.02	0.02
租稅公課		0.004	0.004	0.01	0.01	0.1	0.01	0.01
IV. 漁撈事業原價		(12.3)	(5.8)	(4.9)	(7.1)	(9.1)	(7.4)	(7.7)
原價要素	月別	8	9	10	11	12	合 計	平 均
I. 材 料 費		(4.6)	(5.2)	(4.7)	(2.3)	(2.5)	(41.1)	(3.4)
船 具 費		0.1	0.7	0.4	0.2	0.1	3.4	0.3
漁 具 費		1.3	1.6	0.4	0.3	0.6	9.3	0.8
燃 料 費		1.4	1.4	1.5	1.2	1.1	16.2	1.3
일 음 代		1.3	1.0	1.1	0.5	0.3	6.6	1.5
容 器 代		0.6	0.5	1.2	0.2	0.4	5.6	0.5
II. 勞 務 費		(3.6)	(4.0)	(4.7)	(3.7)	(1.4)	(35.9)	(3.0)
給料 및 賃金		3.1	3.5	4.3	3.3	1.1	30.4	2.5
福利厚生費		0.2	0.2	0.1	0.1	0.1	1.8	0.2
主·副食費		0.4	0.4	0.3	0.3	0.3	3.7	0.3
III. 經 費		(1.8)	(1.7)	(2.1)	(1.7)	(1.7)	(23.0)	(1.9)
船價償却費		0.8	0.8	0.8	0.8	0.8	10.0	0.8
修繕費		0.9	0.9	1.2	0.9	0.8	12.5	1.1
船員共濟料		0.02	0.02	0.02	0.02	0.02	0.3	0.02
租稅公課		0.01	0.02	0.01	0.01	0.01	0.2	0.01
IV. 漁撈事業原價		(10.0)	(10.9)	(11.4)	(7.8)	(5.6)	(100)	(8.3)

近海鮫鱈網漁業經營의 原價實態에 關한 研究

〈表—11〉

總原價 構成比率

(單位：%)

原價要素			月別						
			1	2	3	4	5	6	7
I.	材 料 費		(3.6)	(1.6)	(2.8)	(3.5)	(2.3)	(3.5)	(3.0)
	船 具 費		0.3	0.5	0.2	0.2	0.2	0.2	0.2
	漁 具 費		1.5	0.2	1.1	1.1	0.5	0.3	0.3
	燃 料 費		1.5	0.7	1.3	1.5	1.1	1.7	1.2
	일 舍 代		0.2	0.1	0.1	0.2	0.3	0.7	0.7
	容 器 代		0.1	0.2	0.2	0.5	0.2	0.7	0.6
II.	勞 務 費		(4.1)	(1.5)	(0.9)	(1.7)	(4.3)	(2.2)	(2.4)
	給 料 및 賃 金		3.4	1.2	0.6	1.3	4.0	1.8	1.9
	福 利 厚 生 費		0.3	0.1	0.1	0.1	0.1	0.1	0.2
	主·副 食 費		0.5	0.2	0.2	0.2	0.3	0.2	0.3
III.	經 費		(3.8)	(2.3)	(0.9)	(1.4)	(1.8)	(1.2)	(1.8)
	船 價 償 却 費		0.8	0.8	0.8	0.8	0.8	0.8	0.8
	修 繕 費		3.0	1.5	0.1	0.6	0.9	0.4	1.0
	船 員 共 濟 料		0.02	0.02	0.02	0.02	0.02	0.02	0.02
	租 稅 公 課		0.004	0.004	0.01	0.01	0.1	0.01	0.01
IV.	漁撈事業原價		(11.5)	(5.4)	(4.6)	(6.6)	(8.4)	(6.9)	(7.2)
V.	販賣費及一般管		(0.6)	(0.4)	(0.7)	(0.5)	(0.8)	(0.4)	(0.5)
	理 費								
	販 賣 手 數 料		0.6	0.2	0.2	0.3	0.6	0.4	0.4
	販 賣 管 理 費		0.03	0.2	0.5	0.2	0.2	0.03	0.1
VI.	總 原 價		(12.1)	(5.8)	(5.3)	(7.1)	(9.2)	(7.3)	(7.7)

原價要素			月別						
			8	9	10	11	12	合 計	平 均
I.	材 料 費		(4.3)	(4.9)	(4.3)	(2.2)	(2.3)	(38.3)	(3.2)
	船 具 費		0.07	0.7	0.4	0.2	0.1	3.2	0.3
	漁 具 費		1.2	1.5	0.4	0.3	0.5	8.6	0.7
	燃 料 費		1.3	1.3	1.4	1.1	1.0	15.2	1.3
	일 舍 代		1.2	1.0	1.1	0.4	0.3	6.1	0.5
	容 器 代		0.5	0.5	1.2	0.2	0.4	5.2	0.4
II.	勞 務 費		(3.4)	(3.7)	(4.4)	(3.5)	(1.4)	(33.5)	(2.8)
	給 料 및 賃 金		2.9	3.2	4.0	3.1	1.0	28.3	2.4
	福 利 厚 生 費		0.2	0.1	0.1	0.1	0.1	1.7	0.1
	主·副 食 費		0.3	0.3	0.3	0.3	0.2	3.5	0.3
III.	經 費		(1.6)	(1.6)	(2.0)	(1.6)	(1.5)	(21.5)	(1.8)
	船 價 償 却 費		0.8	0.8	0.8	0.8	0.8	9.4	0.8
	修 繕 費		0.8	0.8	1.1	0.8	0.7	11.6	1.0
	船 員 共 濟 料		0.02	0.02	0.02	0.02	0.02	0.3	0.02
	租 稅 公 課		0.01	0.02	0.01	0.01	0.01	0.2	0.01
IV.	漁撈事業原價		(9.3)	(10.2)	(10.7)	(7.3)	(5.2)	(93.3)	(7.8)
V.	販賣費及一般管		(0.6)	(0.7)	(0.8)	(0.5)	(0.2)	(6.7)	(0.5)
	理 費								
	販 賣 手 數 料		0.5	0.6	0.7	0.5	0.2	5.2	0.4
	販 賣 管 理 費		0.1	0.1	0.1	0.03	0.004	1.5	0.1
VI.	總 原 價		(9.9)	(10.9)	(11.5)	(7.8)	(5.4)	(100)	(8.3)

수 산 경 영 본 집

代 5.2%, 販賣手數料 5.2%, 主·副食費 3.5%, 船具費 3.2%, 福利厚生費 1.7%, 販賣管理費 1.5%, 船員共濟料 0.3%, 租稅公課 0.2%의 順으로서 年支出 費用項目別 構成比率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러한 費用項目中 給料 및 賃金, 燃料費, 修繕費, 漁具費가 總原價의 64%를 占하여, 3分の 2의 支出 現象을 나타내므로, 本漁業에서는 主로 이들 原價要素가 費用項目中 높은 比重을 차지한 實情이다. 이와같은 點은 이미 原價要素別分析에서 說明한 바와 같은 要因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本漁業에서의 原價要素別 構成比率을 表示하면 (表-12)와 같다.

〈表-12〉 原 價 構 成 比 率 (單位: %)

月別 原價要素	1	2	3	4	5	6	7	8	9	10	11	12	合計
I. 材料費	(29.5)	(27.1)	(52.4)	(49.7)	(25.3)	(48.0)	(38.8)	(43.3)	(45.0)	(38.0)	(27.8)	(43.0)	(38.3)
船具費	2.7	7.7	3.3	3.3	2.5	2.0	2.8	0.7	6.2	3.1	2.3	2.4	3.2
漁具費	12.2	3.0	19.6	15.8	5.4	3.4	3.5	11.9	13.5	3.4	3.2	10.0	8.6
燃料費	12.0	12.1	24.2	20.9	12.5	23.8	15.6	13.7	12.1	12.2	14.1	18.6	15.2
얼음代	1.4	1.2	2.4	2.9	2.7	8.9	9.6	11.8	8.8	9.2	5.4	5.1	6.1
容器代	1.1	3.1	3.1	6.7	2.2	10.0	7.3	5.2	4.5	10.1	2.8	6.9	5.2
II. 勞務費	(34.3)	(27.1)	(17.5)	(23.5)	(47.6)	(30.1)	(30.8)	(34.1)	(34.2)	(37.9)	(44.8)	(24.5)	(33.5)
給料및賃金	28.3	21.3	10.3	18.3	43.4	24.8	24.0	29.1	29.7	34.6	39.1	19.2	28.3
福利厚生費	2.2	1.8	2.7	1.7	1.2	1.6	3.0	1.8	1.3	0.6	1.3	1.6	1.7
主·副食費	3.8	4.0	4.5	3.4	2.9	3.7	3.8	3.3	3.1	2.7	4.0	3.7	3.5
III. 經 費	(31.4)	(39.3)	(16.2)	(20.5)	(19.0)	(16.0)	(23.4)	(16.6)	(14.9)	(17.1)	(20.5)	(28.5)	(21.5)
船價償却費	6.5	13.6	14.7	11.2	8.6	10.7	10.2	8.0	7.3	6.9	10.1	14.6	9.4
修繕費	24.7	25.3	1.0	8.9	9.7	4.9	12.8	8.3	7.3	9.9	10.1	13.3	11.6
船員共濟料	0.2	0.4	0.4	0.3	0.2	0.3	0.3	0.2	0.2	0.2	0.3	0.4	0.3
租稅公課	0.04	0.1	0.1	0.1	0.5	0.2	0.1	0.1	0.2	0.1	0.1	0.2	0.2
IV. 漁撈事業 原價	(95.1)	(93.5)	(86.2)	(93.7)	(91.9)	(94.1)	(93.0)	(94.1)	(94.1)	(93.0)	(93.1)	(96.0)	(93.3)
V. 販賣費및 一般管理費	(4.8)	(6.5)	(13.9)	(6.3)	(8.1)	(5.9)	(7.0)	(6.0)	(5.9)	(7.0)	(6.9)	(4.0)	(6.7)
販賣手數料	4.6	3.8	2.9	4.0	6.9	5.5	4.9	5.5	5.3	6.2	6.5	3.9	5.2
販賣管理費	0.2	2.7	11.0	2.3	1.3	0.4	2.2	0.5	0.5	0.8	0.3	0.1	1.5
VI. 總 原 價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 原價趨勢

原價要素의 月別變動狀況을 把握하기 위하여 原價要素別 趨勢值를 求한 것이다. 基準月을 6月로 定하고 基準月의 原價 100에 대하여, 그 以後의 原價를 費目別로, 이에 對하는

近海鮫鱈網漁業經營의 原價實態에 關한 研究

指數로 表示한 것이며, 本漁業의 對象資料가 1976年 6月부터 1978年 5月 이므로 基準月을 6月로 定하여 指數를 表示한 것이다.

材料費는 9月이 139로 가장 높고, 다음해 2月이 45로 가장 낮았는데, 材料費中 船具費, 漁具費, 燃料費의 支出이 他月에 比하여 9月이 많은 傾向이다. 勞務費는 5月이 198로 가장 높고 다음해 3月이 42로 가장 낮으며, 이는 5月이 他月에 比하여 給料 및 賃金의 支出이 많았기 때문이다. 經費는 1月이 323으로 가장 높고, 3月이 74로 가장 낮았으며 修繕費가 1月에 機關修理 漁具整備로 因한 支出이 他月에 比하여 많았다는 것이다. 販賣費 및 一般管理費는 주로 販賣手數料의 多寡에 의하여 支出 傾向이 이루어지므로, 販賣手數料가 가장 많이 支出된 10月(187)이 가장 높고, 12月(50)이 가장 낮았다.

本漁業의 原價要素別 趨勢比率을 表示하면 (表-13)과 같다.

〈表-13〉 原價趨勢表 (單位: 指數)

原價要素	6	7	8	9	10	11	12	1	2	3	4	5
I. 材料費	(100)	(85)	(121)	(139)	(124)	(62)	(66)	(101)	(45)	(80)	(99)	(66)
船具費	100	144	48	450	238	123	86	219	300	116	155	152
漁具費	100	110	478	596	156	103	221	599	70	426	453	201
燃料費	100	87	108	111	91	66	57	84	50	80	93	100
얼음代	100	114	179	146	161	64	42	27	11	19	31	39
容器代	100	77	70	66	158	30	44	18	24	23	66	28
II. 勞務費	(100)	(108)	(153)	(168)	(137)	(159)	(60)	(188)	(71)	(42)	(75)	(198)
給料 및 賃金	100	102	158	177	218	169	57	188	68	30	71	219
福利厚生費	100	201	158	125	62	91	73	229	92	126	106	98
主·副食費	100	143	154	173	155	155	87	299	80	87	88	132
III. 經費	(100)	(154)	(140)	(67)	(166)	(137)	(131)	(323)	(194)	(74)	(123)	(148)
船價償却費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修繕費	100	278	231	221	318	222	202	837	412	15	176	250
船員및共濟料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租稅公課	100	99	99	202	122	69	117	41	35	49	51	440
IV. 漁撈事業原價	(100)	(104)	(135)	(148)	(154)	(106)	(75)	(167)	(78)	(67)	(96)	(122)
V. 販賣費 및 一般管理費	(100)	(126)	(136)	(147)	(187)	(124)	(50)	(137)	(88)	(171)	(103)	(173)
販賣手數料	100	94	135	144	179	127	53	140	55	39	71	157
販賣管理費	100	528	147	189	285	83	13	93	508	1,878	518	380
VI. 總原價	(100)	(105)	(135)	(148)	(156)	(107)	(74)	(165)	(79)	(73)	(96)	(125)

3) 漁獲物 單位原價

製品原價比較라 함은 製品 一單位 (또는 一定 單位)當, 計算한 原價要素를 期間比較 또는 相互比較하는 것을 말한다. 原價要素比較 및 原價部門比較는 어느 것이고, 期間原價를 比較하는데 對하여 製品原價比較는 製品 一單位當에 있어서의 原價構成을 比較하는 것이다.¹⁵⁾

漁獲物 單位原價는 原價要素別 1箱子當 單位原價의 構成을 比較하기 위하여 各 原價要素의 月別金額에서 當該月の 總漁獲量箱子數를 가지고 나눈 金額을 算出하여, 1箱子當 單位原價의 構成을 나타냈다.

材料費와 勞務費는 1箱子當 共히 2월에 2,657원과 2,739원으로 가장 높았고, 반대로 7월도 共히 631원과 501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經費는 2월이 3,978원 販賣費 및 一般管理費는 3월이 688원으로 가장 높고, 9월은 共히 270원과 106원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箱子當 6月の 總原價를 100으로 基準하여 月別로 볼때, 2월은 560.9(10,119원)의 指數로 가장 높았고, 反對로 7월은 指數가 90.1(1,626원)로서 가장 낮았으며, 總原價에 대하여 漁獲物箱子當, 單位原價는 2,807원 이었다.

그러므로 本漁業은 箱子當單位原價가 冬季에 높고, 夏季가 낮은 便으로, 이는 2월에 操業日數가 적어 漁獲量이 不振하여, 原價要素別 單位原價가 높은 傾向이고, 7월은 大體로 漁獲量이 많은 便으로, 箱子當 單位原價가 낮게 나타난 實情이다. 一般的으로 費用支出이 어느 程度 一定한 漁業에서는 漁獲高가 높을수록, 漁獲物 單位原價가 낮은 傾向이다.

本漁業의 漁獲物 1箱子當 單位原價를 表示하면 (表-14)와 같다.

4) 賣出原價率

賣出原價率은 生産原價率이라고도 하며, 賣出原價 對 營業收益比率이라고 말한다. 즉 一會計期間에 發生한 總販賣金額에 대한 總原價合計의 比率이며, 總販賣額 100에 대하여 總原價合計額이 몇%의 比重이 차지하고 있는가의 比率分析: $(\frac{\text{原價合計額}}{\text{販賣金額}} \times 100)$ 으로서 의¹⁶⁾ 全體的인 活動能力을 表示한다. 이 比率은 標準比率이 없으며 低率일수록 收益에 대하여 費用이 적다는 것으로 良好하다는 表示가 되며 利益이 많다는 것이고, 高率일수록 利益이 적다는 것을 表示한다. 企業의 種類에 따라, 이 比率은 大端히 相異하나, 資本回轉率이 빠른 企業에서는 收支比率이 낮다 하여도, 投下資本이 自由로히 運轉되기 때문에 적지 않는 利益을 올릴 수 있는 경우도 있다.

本漁業의 賣出原價率(生産原價率)은 86.7%인데, 그 內容은 總販賣額 100에 대하여 總原價額이 86.7%라는 表示이므로 總收益의 13.3%가 純利益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賣出原價率(生産原價率)은 良好하게 表示되지 못하고 있으나, 普編的인 傾向이라고 하겠다. 大

15) 車均澤: 前掲書, p. 285.

16) 車均澤: 前掲書, p. 114.

近海鮫鱈網漁業經營의 原價實態에 關한 研究

〈表-14〉

漁獲物 單位原價表

(單位：원/箱子)

原價要素	月別	1	2	3	4	5	6	7
I. 材料費		(1,658)	(2,739)	(2,607)	(1,641)	(1,169)	(866)	(630)
船具費		152	782	161	109	114	37	45
漁具費		685	300	975	523	249	60	57
燃料費		679	1,224	1,198	690	576	428	253
引擎代		81	124	117	94	127	160	132
容器代		61	310	155	227	104	181	119
II. 勞務費		(1,926)	(2,739)	(866)	(775)	(2,197)	(543)	(501)
給料賃金		1,591	2,151	509	604	2,005	449	391
福利厚生費		122	183	134	57	57	28	48
主·副食費		213	403	222	114	135	66	62
III. 經費		(1,765)	(3,978)	(807)	(676)	(879)	(289)	(381)
船價償却費		366	1,373	732	369	396	193	165
修繕費		1,387	2,561	51	294	448	88	209
船員共濟料		10	38	20	10	11	5	5
租稅公課		2	6	5	3	24	3	2
IV. 漁撈事業原價		(5,349)	(9,456)	(4,280)	(3,092)	(4,245)	(1,698)	(1,512)
V. 販賣費與一般管理費		(274)	(663)	(688)	(209)	(376)	(106)	(114)
販賣手數料		261	387	144	133	316	98	80
販賣管理費		13	276	544	76	60	8	34
VI. 總原價指		(5,623)	(10,119)	(4,968)	(3,301)	(4,621)	(1,804)	(1,626)
		311.7	560.9	275.4	183.0	256.2	(100)	90.1

原價要素	日別	8	9	10	11	12	合計
I. 材料費		(2,219)	(812)	(656)	(649)	(2,533)	(1,076)
船具費		37	112	53	55	139	89
漁具費		611	244	58	75	591	243
燃料費		698	217	213	329	1,096	426
引擎代		605	158	158	125	299	171
容器代		267	81	174	65	407	147
II. 勞務費		(1,750)	(616)	(654)	(1,042)	(1,443)	(941)
給料賃金		1,490	536	597	918	1,132	796
福利厚生費		94	24	11	31	91	47
主·副食費		166	57	46	93	219	98
III. 經費		(852)	(270)	(294)	(478)	(1,679)	(603)
船價償却費		409	131	118	234	857	265
修繕費		427	131	171	236	784	327
船員共濟料		11	4	3	7	24	7
租稅公課		5	4	2	2	14	4
IV. 漁撈事業原價		(4,821)	(1,698)	(1,604)	(2,169)	(5,654)	(2,620)
V. 販賣費與一般管理費		(306)	(106)	(121)	(160)	(234)	(187)
販賣手數料		281	96	108	152	230	146
販賣管理費		25	10	13	8	4	41
VI. 總原價指		(5,127)	(1,804)	(1,725)	(2,329)	(5,889)	(2,807)
		284.1	100	95.6	129.1	326.4	155.6

수 산 경 영 른 집

<表-15>

賣 出 原 價 率

(單位：%)

原價要素	1	2	3	4	5	6	7
I. 材 料 費	(28.6)	(32.0)	(81.4)	(55.6)	(16.6)	(39.6)	(35.7)
船具費	2.6	9.2	5.0	3.7	1.6	1.7	2.6
漁具費	11.8	3.5	30.4	17.7	3.5	2.8	3.2
燃 料 費	11.7	14.3	30.4	23.4	8.2	19.6	14.2
일 용 器 代	1.4	1.4	3.6	3.2	1.8	7.3	8.8
容 器 代	1.1	3.6	4.8	7.7	1.5	8.2	6.7
II. 勞 務 費	(33.2)	(31.9)	(27.0)	(26.2)	(31.3)	(24.7)	(28.3)
給料費	27.4	25.1	15.9	20.5	28.5	20.4	22.1
福利費	2.1	2.1	4.2	1.9	0.8	1.3	2.7
主·副食費	3.7	4.7	6.9	3.9	1.9	3.1	3.4
III. 經 費	(30.4)	(46.3)	(25.2)	(22.9)	(12.5)	(13.2)	(21.5)
船價却費	6.3	16.0	22.8	12.5	5.6	8.8	9.4
修繕費	23.9	29.8	1.6	10.0	6.4	4.0	11.8
船員共濟料	0.2	0.4	0.6	0.3	0.2	0.2	0.3
租 稅 共 課	0.04	0.1	0.2	0.1	0.3	0.1	0.1
IV. 漁撈事業原價	(92.2)	(110.2)	(113.6)	(104.7)	(60.4)	(77.5)	(85.5)
V. 販賣費 및 一般管理費	(4.7)	(7.7)	(21.5)	(7.1)	(5.3)	(4.8)	(6.5)
販賣手數料	4.5	4.5	4.5	4.5	4.5	4.5	4.5
販賣管理費	0.2	3.2	17.0	2.6	0.8	0.3	2.0
賣出原價率	96.9	117.9	155.1	111.8	65.7	82.3	92.0
利 益	3.1	△17.9	△55.1	△11.8	34.3	17.7	8.0
販賣金額(원)	(100)	(100)	(100)	(100)	(100)	(100)	(100)
	4,746,662	1,871,333	1,310,233	2,395,368	5,315,634	3,392,007	3,197,936

原價要素	8	9	10	11	12	合 計
I. 材 料 費	(35.6)	(30.0)	(27.3)	(19.2)	(49.5)	(33.3)
船具費	0.6	5.2	2.2	1.6	2.7	2.8
漁具費	9.8	11.4	2.4	2.2	11.6	7.5
燃 料 費	11.2	10.2	8.8	9.8	21.5	13.2
일 용 器 代	9.7	7.4	6.6	3.7	5.9	5.3
容 器 代	4.3	3.8	7.3	1.9	8.0	4.5
II. 勞 務 費	(28.0)	(28.9)	(27.2)	(30.8)	(28.2)	(29.0)
給料費	23.9	25.1	24.9	27.1	22.1	24.6
福利費	1.5	1.1	0.4	0.9	1.8	1.4
主·副食費	2.7	2.7	2.0	2.8	4.3	3.0
III. 經 費	(13.6)	(12.6)	(12.2)	(14.2)	(32.9)	(18.6)
船價却費	6.5	6.1	4.9	6.9	16.8	8.2
修繕費	6.8	6.1	7.1	7.0	15.3	10.1
船員共濟料	0.2	0.2	0.1	0.2	0.5	0.2
租 稅 公 課	0.1	0.2	0.1	0.1	0.3	0.1
IV. 漁撈事業原價	(77.2)	(79.6)	(66.7)	(64.2)	(110.6)	(80.9)
V. 販賣費 및 一般管理費	(4.9)	(5.0)	(5.1)	(4.7)	(4.6)	(5.8)
販賣手數料	4.5	4.5	4.5	4.5	4.5	4.5
販賣管理費	0.4	0.5	0.6	0.2	0.1	1.3
賣出原價率	82.1	84.5	71.8	68.9	115.2	86.7
利 益	17.9	15.5	28.2	31.1	△15.2	13.3
販賣金額(원)	(100)	(100)	(100)	(100)	△(100)	(100)
	4,572,733	4,876,965	6,075,752	4,322,359	1,784,483	43,861,465

近海鮫鱈網漁業經營의 原價實態에 關한 研究

体로 賣出原價率은 販賣金額에 關係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本漁業에서 委販金額이 낮은 2月~4月과 12月은 赤字現象이 나타나 收益性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3月이 가장 심한 155.1의 賣出原價率을 보이고 있으며, 한편 委販金額이 좋은 5月과 10月은 賣出原價率이 각각 65.7%와 71.8%로서, 극히 良好한 賣出額 總利益率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하여 年平均 賣出原價率은 86.7%로서, 良好하지 못하나 普編的인 傾向은 費用項目中 給料 및 賃金, 燃料費, 修繕費 등의 많은 支出 現象이며, 특히 3月은 寄附接待費의 過大支出 現象이 나타 났기 때문이다.

本漁業의 賣出原價率(生産原價率)을 表示하면 (表-15)와 같다.

3. 漁撈事業原價計算

一般的으로 原價計算의 歷史는 比較的 짧고, 産業革命의 影響을 받아, 19世紀의 産物로서 20世紀에 들어와 急速한 發展을 한 것이라고 한다.¹⁷⁾ 産業革命으로 인한 工場制度의 確立은 固定設備의 增大와 企業의 大規模化를 招來하고 從前에 없던 減價償却費와 같은 製造間接費의 問題를 가져오고, 激甚한 自由競爭은 利潤率의 低下, 原價節減의 必要, 資本의 集中으로 인한 獨占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環境속에서 正確한 損益計算, 價格의 決定 및 原價管理 등을 目的으로 하는 原價計算制度가 하나의 會計制度로서 要請되고 있으며, 實로 原價計算制度는 이러한 事情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發展되었던 것이다.¹⁸⁾

本來 原價計算의 方法은 製造工業으로 부터 發展되어, 모든 産業分野에 適用된 것이므로 漁撈事業의 原價計算도 原則적으로 一般製造工業의 原價計算方法을 援用하여 實施하게 된다.

漁撈事業이란 漁船과 漁具를 使用하여 海中의 魚類를 捕獲·販賣하는 事業을 말하며, 이때 捕獲한 魚類를 “漁獲物”이라 한다. 漁撈事業은 一般製造工業과는 그 業態가 여러가지로 달라서 原價計算에 있어서도 特殊한 事例가 發生한다. 즉 漁撈事業에 있어서는 主要 材料費의 消費는 없고, 또 어떤 一定期間 操業으로도 漁獲物이 全無한 경우가 發生할 수 있는 反面, 腐敗性이 甚하여, 資本投下에 대한 結實이 不確實 하다는 點이다. 이런 現象은 一般製造工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漁撈事業原價計算은 漁獲物을 捕獲하기 까지 消費한 經濟價値를 漁獲物 一定單位當(箱子當·kg當)으로 計算하는 것을 말한다. 漁撈事業原價計算을 一般沿岸漁業이나, 零細한 漁家漁業에 까지 適用·實施한다는 것은 그 業態나 會計能力面에서 볼 때 무리한 것이며 遠洋漁業이나, 近海漁業의 範圍에나 適用해야 할 것이다.¹⁹⁾ 그러나 漁撈事業原價計算을 一般沿岸漁業이나 零細한 漁家漁業에 까지 適用·實施 한다는 것은 原價의 構成內容과 漁獲物의 單

17) A. C. Littleton, Accounting Evolution to 1970. 片野一郎譯, 리틀튼 會計發達史, p.437

18) 尹根鎬: 前揭書, p. 1.

19) 姜吉遠: 前揭書, pp. 157~161.

수 산 경 영 본 집

<表—16>

漁獲物原價計算表

(單位: 元)

原價要素		月別						
		1	2	3	4	5	6	7
I.	材 料 費							
	船 具 費	124,403	170,540	69,965	88,061	86,175	58,800	81,654
	漁 具 費	560,715	65,340	398,954	424,004	188,015	93,565	103,225
	燃 料 費	555,041	266,348	266,748	559,413	435,890	662,345	457,518
	容 器 代 價	66,413	27,000	47,738	76,390	95,775	248,090	283,010
	容 器 代 價	50,000	67,500	63,500	183,750	78,250	279,500	215,500
II.	勞 務 費							
	給 料 費	1,301,796	469,157	208,320	489,949	1,515,754	692,124	707,207
	福 利 費	99,600	39,975	54,900	46,000	42,800	43,520	87,300
	主 副 食 費	173,970	87,950	90,639	92,315	102,400	103,000	111,175
III.	經 營 費							
	船 價 却 費	299,215	299,215	299,215	299,215	299,215	299,215	299,215
	修 繕 費	1,134,210	558,260	20,666	238,650	338,500	135,525	377,400
	船 員 共 濟 料	8,334	8,334	8,333	8,333	8,333	8,333	8,334
	租 稅 公 課	1,650	1,400	2,000	2,050	17,800	4,050	4,015
IV.	漁撈事業原價合計	4,375,347	2,061,419	1,750,436	2,508,130	3,208,907	2,626,067	2,735,553
V.	販賣費							
	販賣費	224,620	144,460	281,476	169,227	284,239	164,491	206,532
	販賣手續費	213,600	84,210	58,961	107,792	239,204	152,641	143,907
	販賣管理費	11,020	60,250	222,515	61,435	45,035	11,850	62,625
	總原價	4,599,967	2,205,879	2,031,912	2,677,357	3,493,146	2,790,558	2,942,085
	漁獲物數量(箱子)	818	218	409	811	756	1,547	1,809
	單位當原價	5,623	10,119	4,968	3,301	4,621	1,804	1,626
	漁獲物數量(kg)	12,270	3,270	6,135	12,165	11,340	23,205	27,135
	單位當原價	375	675	331	220	308	120	108
原價要素		月別						
		8	9	10	11	12	合計	平均
I.	材 料 費							
	船 具 費	27,000	255,679	135,110	69,696	48,661	1,209,744	100,812
	漁 具 費	447,365	558,010	146,110	96,040	206,335	3,287,678	273,972
	燃 料 費	511,206	496,325	534,665	420,358	382,415	5,772,139	481,011
	容 器 代 價	442,932	362,050	399,745	159,575	104,485	2,313,203	192,767
	容 器 代 價	195,600	185,000	440,875	83,000	142,000	1,984,475	165,373
II.	勞 務 費							
	給 料 費	1,091,044	1,224,553	1,510,967	1,173,004	395,209	10,779,084	898,257
	福 利 費	68,800	54,500	26,800	39,500	31,800	635,495	52,958
	主 副 食 費	121,475	129,855	117,100	119,325	76,500	1,325,695	110,475
III.	經 營 費							
	船 價 却 費	299,215	299,215	299,215	299,215	299,215	3,590,580	299,215
	修 繕 費	312,462	299,797	431,134	301,146	273,695	4,421,445	368,454
	船 員 共 濟 料	8,334	8,333	8,333	8,333	8,333	100,000	8,333
	租 稅 公 課	4,000	8,200	4,950	2,795	4,750	57,660	4,805
IV.	漁撈事業原價合計	3,529,433	3,881,517	4,055,004	2,771,987	1,973,398	35,477,198	2,956,433
V.	販賣費							
	販賣費	223,173	241,889	307,142	204,354	81,852	2,533,455	211,121
	販賣手續費	205,773	219,464	273,409	194,506	80,302	1,973,769	164,481
	販賣管理費	17,400	22,425	33,733	9,848	1,550	559,686	46,641
	總原價	3,752,606	4,123,406	4,362,146	2,976,341	2,055,250	38,010,653	3,167,554
	漁獲物數量(箱子)	732	2,286	2,529	1,278	349	13,542	1,129
	單位當原價	5,126	1,804	1,725	2,329	5,889	2,807	2,807
	漁獲物數量(kg)	10,980	34,290	39,935	19,170	5,235	203,130	16,928
	單位當原價	342	120	115	155	393	187	187

近海鮫鱧網漁業經營의 原價實態에 關한 研究

位當漁撈事業原價計算을 通하여 節減 시켜야 할 原價項目을 찾아내고, 原價發生에 關한 推勢를 把握함으로써, 漁業經營에 計數的 管理의 必要性을 鼓吹시켜 주는데 그 意義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다만 中小漁業에서는 期間計算的인 商業簿記的 方式으로 漁撈事業原價計算을 實施하는 것으로 滿足해야 한다.

漁撈事業의 原價計算은 그 性格上 綜合原價計算方法에 의하게 되는데, 綜合原價計算은 市場을 目標로 하여 標準化된 製品을 繼續 大量生産하는 企業에 있어서 主로 適用하는 原價計算의 方法이다. 그 計算의 特徵은 一定한 期間(原價計算期間)에 發生한 總製造費用을 그 期間의 生産數量으로서 나누어 單位當의 原價를 算出하는 것이다. 그런데 大概 單船式 漁業은 單純綜合原價計算을, 母船式 漁業은 工程別 綜合原價計算이나 連產品原價計算方法을 採擇하고 있다. 이런 點으로 보아, 本漁業은 單船式 漁業의 경우로서 單純綜合原價計算方法에 의하여 原價를 算出하여야 될 것이다. 즉 單純綜合原價計算은 生産過程이 至極히 單純하여 單一한 工程을 거쳐서 製品이 完成될 경우에는 一定한 期間의 總製造費用(總原價)을 그 期間의 生産數量으로 除함으로써 簡單히 算出 될 수 있다²⁰⁾ 그러므로 本漁業의 漁獲物 原價計算은 單純綜合原價計算方法에 의하여 漁獲物 單位當原價를 箱子 및 kg別로 算出하여 보았다.

그리하여 近海鮫鱧網漁業의 漁獲物 原價計算表를 表示하여 보면 (表-16)과 같다.

本漁業의 漁獲物 單位原價(箱子當·kg當)는 總原價(38,010,653원)에 대하여 箱子當 2,807원, kg當 187원으로 算出 되었다. 月別로 보면 漁獲物 單位原價는 大體로 委販金額이 적은 冬季와 春季에 높고, 委販金額이 많은 夏季와 秋季에 낮은 傾向이다. 이는 主로 費用支出額과 委販金額의 多寡에 基因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V. 近海鮫鱧網漁業의 損益分岐點分析

企業에서 費用의 增加는 企業의 利益에 直接 影響을 미치기 때문에 利益計劃과 費用計劃과는 密接한 關係가 있다. 그러므로 實로 生産要素費로서의 勞務費 增加 및 固定設備擴張의 方針樹立에 앞서 損益分岐點分析을 利用한다는 것이다.²¹⁾

損益分岐點은 一期間의 賣出額(生産額)과 總費用이 均衡하는 點을 말하며, 損益分岐點은 收益額과 費用額이 均等하는 一致點이기 때문에 損失도 利益도 發生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賣出額이 그 點以下로 下落하면 그만큼 損失이 發生하고, 그 點 以上으로 上昇하면 그만큼 利益이 發生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損益分岐點은 賣出額(生産額)의 變動에 따라 收益, 費用 및 利益의 變動狀態가 發生하는 相互關係를 明示하는 것이기 때문에 利益計劃 或은 利益管理의 明示로 利用되는데 使用된다.

20) 尹根鎭: 前揭書, p. 46.

21) 車均澤: 前揭書, p. 252.

수 산 경 영 론 집

企業은 收益을 올리려면 費用이 所要되며, 그 費用은 賣出額(生産額)의 增減에 따라 增減되지 않는 部分과 增減되는 部分이 있기 때문에 固定費와 變動費로 區分하여 생각한다. 그래서 固定費는 企業이 繼續되는 限 반드시 發生하는 費用이고, 變動費는 經營의 平常狀態에 變化를 가져와 平常以外的 費用支出이 發生하게 되는 때에 支出되는 費用이므로 賣出額(生産額)에서 變動費를 空除한 나머지가 固定費와 一致하는 點이 損益分岐點이 된다²²⁾

이와같은 概念에 따라 費用項目에 대한 分類基準은 :

船價償却費, 船員共濟料, 租稅公課는 全額을 固定費로, 船具費, 漁具費, 燃料費, 鷄음代 容器代, 販賣手數料는 全額을 變動費로, 給料 및 賃金, 福利厚生費, 主·副食費는 固定費 1/4, 變動費 3/4으로, 修繕費는 固定費 1/3, 變動費 2/3, 販賣管理費는 固定費와 變動費를 各各 1/2로 했으며, 이 分類基準의 算定方法에 따라 算出한 結果를 (表-17)과 같이 表示하였다.

<表-17> 損 益 分 岐 點 (單位: 圓)

項 目	金 額	固 定 費	變 動 費
總 生 產 費	43,861,465		
船 具 費	1,209,744		1,209,744
漁 具 費	3,287,678		3,287,678
燃 料 費	5,772,139		5,772,139
鷄 音 代	2,313,203		2,313,203
容 器 代	1,984,475		1,984,475
給 料 및 賃 金	10,779,084	2,694,771	8,084,313
福 利 厚 生 費	635,495	158,874	476,621
主·副 食 費	1,325,695	331,424	994,271
船 價 償 却 費	3,590,580	3,590,580	
修 繕 費	4,421,445	1,473,815	2,947,630
船 員 共 濟 料	100,000	100,000	
租 稅 公 課	57,660	57,660	
販 賣 手 數 料	1,973,769		1,973,769
販 賣 管 理 費	559,686	279,843	279,843
費 用 合 計	38,010,653	8,686,967	29,323,686
純 利 益	5,850,812		
損 益 分 岐 點	26,209,168		

22) 車均澤: 前掲書, p. 214.

近海鮫鱈網漁業經營의 原價實態에 關한 研究

그러므로 (表-17)에 의하면 固定費 合計는 8,686,967원이고, 變動費合計는 29,323,686원으로서 總費用合計는 38,010,653원이며, 總生産額(總委販金額)은 43,861,465원이다. 그리하여 損益分岐點算出公式: $\text{固定費} \div (1 - \frac{\text{變動費}}{\text{生産額}})$ 에 의해서²³⁾ 計算해 본 結果, 損益分岐點은 26,209,168원으로 算出 되었다. 이 算出根據에 따라 損益分岐圖表를 作成하여 보면 <圖-2>와 같이 圖示할 수 있다.

그러므로 本漁業은 賣出額(委販金額)이 26,209,168원을 上廻할 때에 그만큼 利益이 發生되나, 下廻한다면 그만큼 損失이 發生하게 된다. 즉 賣出額(委販金額)은 變動費와 固定費의 總費用을 補償하고도 剩餘가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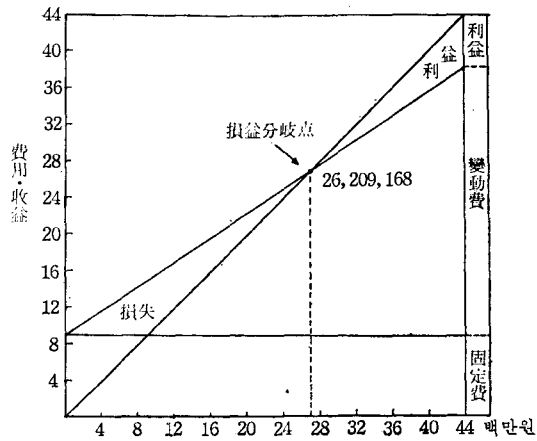
VI. 結 論

지금까지 考察한 近海鮫鱈網漁業經營의 原價構成要素에 關한 實態를 分析 把握하고, 漁撈事業原價計算을 통한 漁獲物 單位原價 算出과 損益分岐點分析의 結果를 要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本漁業의 總原價는 38,010,653원으로 이 中 生産原價(漁撈事業原價)는 93.3%인 35,477,198원이고, 總原價 100에 대하여 材料費는 38.3% (14,567,239원), 勞務費는 33.5% (12,740,274원), 經費는 21.5% (8,169,685원)이며, 販賣費 및 一般管理費는 6.7% (2,533,455원)의 構成比率로 支出된 實情이다. 그러므로 本漁業은 거의가 生産原價로서 投下되어, 漁業經營에 있어 生産費로서 營爲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販賣費 및 一般管理費가 極小하여 거의가 93%以上 漁撈事業費로서 支出되고 있는 實情이기 때문이다.

本漁業에 있어서 原價要素의 構成比率는 總原價 100에 대하여 給料 및 賃金 28.3%, 燃料費 15.2%, 修繕費 11.6%, 船價償却費 9.4%, 漁具費 8.6%, 賃金代, 6.1%, 容器代 5.2%, 販賣手數料 5.2%, 主·副食費 3.5%, 船具費 3.2%, 福利厚生費 1.7%, 販賣管理費 1.5%, 船員共濟料 0.3%, 租稅公課 0.2%의 順으로 年支出費用 項目이 이루어진 셈이다. 特히 給料 및 賃金, 燃料費, 修繕費, 漁具費가 總原價의 64%를 占하여, 3分の 2의 支出現象을 나타 내므로, 本漁業에서는 主로 이들 原價要素가 費用項目中 높은 比重을 차지한 實情이다.

또한 漁獲物 單位原價(箱子當·kg當)는 箱子當, 2,807원이고, kg當 187원이었다. 賣出



生産額(販賣金額) <圖 2> 損益分岐圖表

23) 車均澤: 前掲書, p. 222.

수 산 경 영 론 집

原價率(生産原價率)은 86.7%이므로 利益率은 13.3%로서, 곧 總收益의 13.3%(5,850,812원)가 純利益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賣出原價率(生産原價率)은 良好하게 表示되지 못하고 있으나, 普編의인 傾向이라 하겠다.

그리고 損益分岐點에 있어서는 總生産額(漁業收入)에 대하여 總費用比率이 86.7%이므로, 損益分岐點은 26,209,168원이 된 셈이다. 그러므로 良好한 利益管利를 위해서는 生産額을 높이고, 費用支出의 節減方法을 講究 함으로써, 損益分岐點이 낮게 될 것이며, 따라서 收益性이 向上될 줄로 생각된다.

이러한 點은 本漁業의 費用項目中 總原價의 64%를 占하여, 3分の 2의 支出 現象을 나타낸, 이들 原價要素가 過大支出로 因한 收益性이 낮은 傾向으로, 近來에 와는 本漁船의 船幅이 大量으로 增加하고, 鋼船이 建造되어 漁船의 規模가 增加 되므로 漁業機器 自体가 機械體系化 되고 있어 近海漁業으로 轉換되어 가므로 從來의 資質이 낮은 船員으로서는 當당하기가 어려워져 資質을 갖춘 船員을 確保하기 위한 船員需給에 隘路를 가져오는 實情이고 보니 自然히 人件費의 上昇이라는 傾向을 가져오는 點과 漁場距離가 遠隔한데다가 船員의 資質이 낮아 漁場에서의 魚群探索이 容易하지 않아, 漁場移動에 따른 航海時間이 너무 길어서 油類의 消耗가 自然히 많아진다는 點, 또는 機關修理 및 整備가 每航次別 部分的 修理의 頻度가 잦고, 漁具에 있어서도 수해와 압해를 형성하는 連結된 鐵파이프의 改良漁具를 使用하고 있기 때문에 水壓에 견디지 못할 경우에는 자주 破損 되므로 이때마다 修理를 要하는 便이, 많고, 漁網은 자주 補網하기 때문에 網糸 등의 使用이 많게 된다. 또한 作業中 船員의 不注意로 因한 船員 被害로 말미암아 寄附接待費로서의 一般管理費의 增大를 招來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近海鮫鱈網漁業經營은 이와같은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으므로 이를 解決하기 위한 對策으로, 우선 船員需給問題로서, 近來 漁船의 船幅이 增加 됨에 따라, 漁業機器 自体가 高度化 되었기에, 이를 操作할 수 있는 資質을 갖춘 船員을 容易하게 求할 수 있어야 한다는 點이다. 그러기 위해서 充分히 資質을 갖춘 수 있는 船員의 教育訓練이 必要하다. 그리하여 教育訓練된 船員들은 漁場 把握이 容易하여 長時間의 航海를 要치 않으므로 油類의 消耗가 적어 燃料費의 節減을 가져오고, 教育訓練이 잘된 船員이기에 作業上 安全操業이 이루어져, 管理費가 節減 된다. 또한 漁具·漁法의 改善에 關한 새로운 研究結果가 必要하다. 즉 水壓에 견디기 어렵고, 勞動力을 必要로 하는 鐵파이프로 된 수해와 압해의 製品製作에 對應하여 展開版(otter board)을 使用할 수 있는 새로운 漁具·漁法의 研究가 試圖되므로서 漁獲量(漁業收入)이 增加되고, 船員이 減縮되어 人件費가 節減 되므로, 原價節減을 期할 수 있는 契機가 되어 本漁業經營의 合理化를 圖謀할 수 있게 된다.

以上과 같이 近海鮫鱈網漁業經營의 原價實態와 여기에 問題點과 對策을 要約하여 보았으며, 本論文이 計數的 管理의 必要性을 認識하여 實踐할 수 있도록 業界에 多少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앞으로의 研究를 위한 契機를 마련해줄 수 있는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된다.

Summary

The analyzed results of the actual state of stow net fishery based on the cost expended are as follows.

According to the calculation of interests, the total cost of this fishery comes to ₩38,010,653 and in this account, the production cost comes to ₩35,477,198(93.3%), the material cost, 14,567,239(38.3%), the labour cost, 12,740,274(33.5%), the expenses, ₩8,169,685(21.5%), the commission and administration expenses, 2,533,455(6.7%).

The expenses for this fishery are paid out as production costs, and the expenses for sale and administration expenses are the lowest of them, and the 93% of expenses are paid out as production costs.

The ratio of cost element to 100 % is as follow.

The wages, 28.4%, fuel, 15.2%, repair, 11.6%, depreciation, 9.5%, fishing gear, 8.7%, ice, 6.1%, container(box for fish), 5.2% administration expenses, 5.2%, food, 3.5%, ship gear, 3.2%, public welfare, 1.7%, commission for sale, 1.5%, insurance for crew, 0.2%, taxes, 0.2%.

This fishery is managed with the larger fishing boat than it was and so, it demands better crews with higher wages.

In the former fishery, the search for fishing ground is very difficult with long navigation and great fuel consumption.

When the weak fishing gears are used, the expenses for their repair and for their gears are greatly paid out.

The unit costs of catches to each box come to ₩2.807 (₩ 187 each kg).

As the ratio of cost of sales comes to 86.7% and the ratio of interests comes to ₩5,850,812(13.3%), and so the net profit comes to 13.3% of total profits.

According to above the ratio of cost of sales is shown as a universal validity,

As the total expenses comes to 86.7% to the money on sales in the break-even point, the break-even point comes to ₩ 26,209,168.

Accordingly for the profit control the account of production should be raised, and by the saving method of expenditure the break-even point should be brought down for the development of total profits.